

정책연구 2021-10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1-10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진

권오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및 범위

(1) 연구목적

-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 관련 제1항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의의 및 관련 법령간 법체계 검토
- 제2항 행안부장관의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관련 구성항목 및 운영방안 마련

(2) 연구범위

- 내용범위
 -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및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신설의 의미
 - 지방자치법과 자치정보 공개관련 법령간 법체계 관계 검토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 사례분석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개선안 마련
(공개목적, 공개항목, 공개양식)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개선안 마련
(비교집단, 총괄조직, 정보관리체계, 공개장소)
 - 지방자치단체 이행확보 방안
- 대상범위
 - 현재 법령에 의한 공개부문중 자치행정부문에 한정(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의 공개는 아래와 같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개정보를 취합, 체계화 하여 공개하는 것은 크게 자치행정과 지방재정 2개 영역임)
 -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조직운영과 인사운영 2개 부문이 현재 공개중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부문이 추가
 - 지방재정영역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독자적 공개시스템 운영중

〈지방자치관련 정보공개 현황〉

공개분야	공개주체	관련법령	주요내용	공개장소	비고
사전정보 공개	지방자치 단체장	정보공개법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 행안부는 공공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표준 모델 제공 및 이행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종합평가 실시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 회의(제65조) 및 회의록(제72조), 의정비(제33조, 시행령 제34조) 등	지방의회 홈페이지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행안부장관 공개시스템 포함)
지방조직	행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 행안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음(내고장알리미에 공무원 정원 등 5개 항목 공개)	내고장 알리미	
지방인사	행안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를 공개 ▶ 행안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음(내고장알리미에 공무원 현원 등 15개 항목 공개)	내고장 알리미	
지방재정	행안부장관	지방재정법	▶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지방재정의 구체적인 항목 명시 ▶ 행안부장관은 지자체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음	지방재정 365	
합동평가	행안부장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공공기관평가 실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개	내고장 알리미	
기타		-	▶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현황 정보	행안부 홈페이지	

-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자치정보 공개시스템으로 하나의 공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관된 체계하에 운영되어 온 지방재정부문과 달리 지방행정부문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 노정(부문확대, 영역간 연계성 미비, 공개목적 및 지표선정 기준 상이, 비교집단 적용유무 및 적정성, 관리체계 복잡, 총괄조직 부재, 이행 확보력 미흡 등)
- 때문에 행정안전부 통합 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전적 단계로 자치행정부문에 대한 체계적 공개시스템 정비 및 운영방안 마련 시급

II.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및 의의

(1)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 지방자치정보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주체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그 활동을 위하여 자원의 투입에서 결과의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를 의미
 - 운영주체와 정보생산영역의 조합
 -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하는 자치정보는 위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정보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하는 목적에 맞게[목적],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수집], 주민이 알기 쉽게 하여 [가공] 제공하는 정보

(2) 지방자치정보 공개의무 신설의 의의

- 먼저, 제26조 1항의 경우,
 - 첫째,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에 대한 재천명이라는 측면과 함께,
 - 둘째,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원리 천명
 -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
 - 셋째, ‘지방자치정보’를 통한 정보의 체계화 근거 마련
 - 종래 각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공개항목의 선정 및 공개방식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정보, 생산주체의 상이로 각각의 주체에 맡겨져 있던 정보(집행기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정보’로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켜, 공개항목의 선정, 절차, 운영의 체계화 근거 제공
- 다음, 제26조 2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제시
 - 소극적 역할 : 종래의 감독기관의 규제/감독 ->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 적극적 역할 : 자치단체간 비교평가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발전 조장

III.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사례분석

(1) 분석개요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영역의 정보공개시스템 운영(한국, 일본)
 - 다만 우리나라 사례의 경우 지방재정부문 공개와 비교 포함
-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핵심요소인 구성항목 측면(공개목적, 공개지표, 공개양식)과 운영요소 측면(비교집단, 관리체계, 총괄조직, 공개장소, 법적근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검토

〈우리나라 자치행정부문과 지방재정부문 자치정보공개 비교〉

		자치행정부문			지방재정부문
공개영역		[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 + α			[지방재정]
공개목적		[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의정활동] X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및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구성	지표 선정	비교지표	현황지표	X	비교지표
	공개 양식	지표중심	지표중심	X	지표중심
운영	비교 집단	9유형	X	X	14유형
	관리 체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단체</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생산/공개</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4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협조</div> <div style="margin-right: 10px;">협조(의무)</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수집/가공(1)</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행정과</div> <div>가공(2)/공개</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단체</div> <div style="margin-right: 10px;">생산/공개</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left: 4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div> <div>수집/가공/공개</div> </div>

		자치행정부문	지방재정부문
총괄 조직		X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행정과 담당자간 협업)	행안부 재정협력과
	공개 장소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365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개별법령(행안부장관 공개)	지방재정법
이행확보		X	지방재정법 (자료제공 등 절차 규정)

〈한국과 일본의 자치행정부문 정보공개 비교〉

		한국(자치행정부문)			일본(자치행정부문)
공개영역		[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 + α			[급여인사]1)
공개목적		[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 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의정활동] X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관리 상황을 국민, 주민에게 공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구성	지표 선정	비교지표	현황지표	X	비교지표 + 현황지표
	공개 양식	지표중심	지표중심	X	보고서양식(비교+현황)
운영	비교 집단	9유형	X	X	광역(1) 기초[지정시, 특례시, 일반시(16), 정(15), 촌
	관리 체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단체</div> 생산/공개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5px 0;"> 협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행정안전부</div> 수집/가공(1)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5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div> 가공(2)/공개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자치행정과</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총무성</div> 공개양식 제공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 5px 0;"> 협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자치단체</div> 작성/공개* </div>
		X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행정과 담당자간 협업)			총무성 자치행정국 공무원과(급여능력추진 실2))

		한국(자치행정부문)	일본(자치행정부문)
공개 장소		내고장알리미	총무성 홈페이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개별법령(행안부장관 공개)	(일본)지방공무원법(자치단체 공개의무)
이행확보		X	내각결의(총무성 비교공시)

주1: 일본의 경우 조직, 인사사항은 자치단체 권한사항으로 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음. 단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인력운영과 보수사항에 대한 비교(유사단체, 민간, 국가공무원 대비) 등 포함

주2: 급여능력추진실(일본 총무성 자치행정국 공무원과 소속)

(업무) 総務省組織規則

(1)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 및 교육연수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2)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급여, 정원 및 교육연수에 관한 행정의 협력 및 기술적 조원에 관한 것

(실무) 지방공무원 급여, 정원, 인재육성 등 추진상황 조사, 지표공개, 검토사항 통지, 관련 연구회 운영 등

(2) 시사점

① 공개목적의 명확화

-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규정
- 공개목적은 공개지표의 선정 및 공개양식의 결정과 연관

② 공개지표, 공개양식

- 공개목적과 연계 구성

③ 비교집단

- 주민과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특성에 따라 유사단체 구분 필요
- 우리의 경우 자치행정영역(조직운영부문)과 지방재정영역 공히 각각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편의적 구분
-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은 물론, 중앙정부적 차원의 자치단체 정책 추진시 기본이 되는 공통의 유사단체 유형구분 모델 개발 필요

④ 관리체계

- 앞서 (우리나라)지방재정영역이나 (일본)자치행정부문 공개시스템의 정보데이터 수집-가공-공개과 달리 (우리나라)자치행정부문의 경우 정보데이터 수집 및 1차 가공(비교데이터블) 부서가 다수이고, 이를 취합 2차 가공(시각화 등)하는 부서가 상이하여 데이터 정합성 문제를 해결할 정보데

이더 관리체계 검토 중요

⑤ 총괄조직

- (우리나라)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총괄조직 없이 관련부서 담당자 단위의 협업에 의하여 공개시스템 운영
- 정보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운영 및 관리책임,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적 활용 등 차원에서 총괄조직 검토 필요

⑥ 이행확보

- (우리나라)지방재정영역이나 (일본)자치행정영역 공개시스템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내각결의안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확보 문제 없음
- 그러나 (우리나라)자치행정영역의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행안부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고, 구체적 이행절차 미포함되어 자치단체의 이행확보 장치 마련 시급히 필요

IV.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지표구성 및 운영방안

(1) 공개목적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목적은 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를, ②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치단체간 비교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음
- 이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적 통제에 의한 자치권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역할변화를 모색

(2) 공개지표

[선정기준(안)]

구분	지표구분	고려사항	비고
지방자치 목적부합성	① 지역주민 평가지표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 및 평가가 가능한가?	①, ②의 특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지표를 우선 선정하되, 주민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만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
	② 자치단체 개선지표	유사단체간 비교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개선의지 도출이 가능한가?	
객관적 비교가능성	③ 양적지표	계량화된 객관적 수치값의 추출이 가능한가?	③, ④의 특성 모두 충족 필요
	④ 운영지표	자치단체 운영의 투입, 과정 및 산출을 나타내줄 수 있는 지표인가?	

[지표추가(예시)]

① 조직운영(현재 5개 지표)

영역	검토(예시)	의미
조직운영	전체 팀단위중 과소팀 비율	최소조직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노정 (과소팀은 '1팀장 1직원 팀'을 의미)
참고지표	인구증감율	업무량 영향 요인(증가율 높을수록 복지 및 다양한 신규수요 증대)
	관할면적	업무량 영향 요인(면적 많을수록 관리적 측면의 수요 증대)
	유기한민원발급량	업무량 영향 요인(유기한 민원 발급량 많을수록 개발 수요 등 관련 업무량 증가)

② 인사운영(현재 15개 지표)

영역	검토(예시)	의미
인사운영	공무원 1인당 평균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많을수록 워라벨 수준 저하
	공무원 1인당 평균휴가잔여일수	평균잔여일수 많을수록 워라벨 수준 저하
	공무원 1인당 평균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높을수록 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직원교육의지 높음 반영 (offline 교육)

※ 조직운영과 인사운영 지표의 경우 통합 운영(조직과 인사는 연계 운영, 현재와 같은 분리 공개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담당부서 중심)

③ 의정활동

영역	검토(예시)	의미
의정활동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원의 의지 반영
	지방의원 의정비	평균보다 높을 경우 과다 책정, 낮을 경우 과소 책정
	지방의원 회의출석율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성실도 반영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반영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극성 반영

(3) 공개양식

- 조직운영부문 : 유사단체(비교집단) 세분화
- 인사운영/의정활동부문 : 유사단체 비교 적용

〈공개양식(예) : 조직운영 - 공무원1인당 주민수 비교〉

[현행방식]

연번	구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평균(단위: 명)
1	특광역시	371
2	도	390
3	50만 이상시	297
4	50만 미만 일반시	207
5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136
6	5만 이상 군	100
7	5만 미만 군	54
8	특별시 자치구	265
9	광역시 자치구	299

구분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 시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5만 이상군	5만 미만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최대 지자체명	517 서울 [본청]	909 경기 [본청]	367 경기 고양시	355 경기 의정부시	232 경북 구미시	270 대구 달성군	78 충북 충청군	396 서울 송파구	457 대구 달서구
최소 지자체명	155 세종 [본청]	109 제주 [본청]	207 경남 창원시	68 강원 태백시	71 강원 삼척시	57 경북 의성군	23 경북 울릉군	101 서울 중구	83 부산 중구
평균	371	390	297	207	136	100	54	265	299

(‘50만 미만 일반시’ 클릭)

연번	시도	기관구분	기관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개유형	기구설치기준		
1	경기	시	4	4-1	파주시	283
2	경기	시	4	4-1	의정부시	355
3	경기	시	4	4-1	김포시	353
4	경기	시	4	4-1	광주시	301
5	경기	시	4	4-1	광명시	251
6	경기	시	4	4-2	군포시	288
7	경기	시	4	4-2	하남시	317
8	경기	시	4	4-2	오산시	300
9	경기	시	4	4-2	양주시	212
10	경기	시	4	4-2	이천시	191
11	경기	시	4	4-2	구리시	251
12	경기	시	4	4-3	안성시	185
13	경기	시	4	4-3	포천시	150
14	경기	시	4	4-3	의왕시	234
15	경기	시	4	4-4	여주시	116
16	경기	시	4	4-4	동두천시	142
17	경기	시	4	4-5	과천시	116
18	강원	시	4	4-4	동해시	136
19	강원	시	4	4-5	태백시	68
20	강원	시	4	4-5	속초시	122
21	충남	시	4	4-4	논산시	107
22	충남	시	4	4-5	계룡시	107
23	충남	시	4	4-3	당진시	145
24	전남	시	4	4-2	목포시	173
25	경남	시	4	4-1	양산시	262
평균						207



[수정방식(예시)] '50만 미만 일반시'

[일반시 4-1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의정부시	355	- 유사집단내 최대(예)
경기	김포시	353	
경기	광주시	301	
경기	파주시	283	
경기	광명시	251	- 유사집단내 최소(예)
경남	양산시	262	
유사단체 평균		301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 해당 수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1~2줄로 요약 기술]

[일반시 4-2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하남시	317	
경기	오산시	300	
경기	군포시	288	
경기	구리시	251	
경기	양주시	212	
경기	이천시	191	
전남	목포시	173	
유사단체 평균		247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3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의왕시	234	※ 보충 의견(예)
경기	안성시	185	
경기	포천시	150	
충남	당진시	145	
유사단체 평균		179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4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동두천시	142	
경기	여주시	116	
강원	동해시	136	
충남	논산시	107	
유사단체 평균		125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5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과천시	116	
강원	속초시	122	
강원	태백시	68	※ 보충 의견(예)
충남	계룡시	107	
유사단체 평균		103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4) 비교집단

구분	단기안 [조직기구설치기준 원용]	중장기안 [신규 유사단체 유형구분 개발]
특징	- 현재 조직기구 설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유형구분 보완 활용	- '인구' 기준으로만 유형구분이 되어 조직기구 설치기준을 전면 개편 - '인구'이외 유형화 반영 기준 개발(* 일본의 경우 인구와 산업구조로 유형 세분화)
장 단점	장점 - 신속 적용가능(기 설치 기준 활용) - 자치단체 수용성 용이	- 자치단체 특성 반영 용이 - 중앙정부의 지자체 정책에 통일적 활용(유사단체 세분화 모형)
	단점 - 자치단체 도시특성 반영 한계	- 모형개발 시간 소요
비고	- 단기적으로는 조직부문에 기구설치시 활용하고 있는 '조직기구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하되, - 중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유사단체 구분모형을 개발, 적용 필요	

[중장기안]

- 인구변수의 여타 변수와의 조합을 통한 유형화모형 연구개발 필요
- 참고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기준 비교〉

한국	인구규모
조직운영	인구규모 × 인구규모
지방재정	인구규모 × 재정여건

주 : 조직운영은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간 재정상황 평가목적 활용

일본	산업구조특성(산업별취업인구구성비)
공통사용	인구규모 × 산업구조특성

주 : 비유형화단체 : 도도부현,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특별구, 촌 각각 1그룹

〈일본 지방자치단체(시, 정)의 유사단체 유형구분〉

市 유형구분		산업구조			
		2차, 3차 90% 이상		2차, 3차 90% 미만	
		3차 65% 이상	3차 65% 미만	3차 55% 이상	3차 55% 미만
		[유형3]	[유형2]	[유형1]	[유형0]
인구	0 이상~50,000 미만 [유형I]	I-3 (36단체)	I-2 (78단체)	I-1 (128단체)	I-0 (35단체)
	50,000 이상~100,000 미만 [유형II]	II-3 (84단체)	II-2 (86단체)	II-1 (68단체)	II-0 (12단체)
	100,000 이상~150,000 미만 [유형III]	III-3 (51단체)	III-2 (30단체)	III-1 (22단체)	III-0 (1단체)
	150,000 이상~ [유형IV]	IV-3 (32단체)	IV-2 (19단체)	IV-1 (5단체)	IV-0 (0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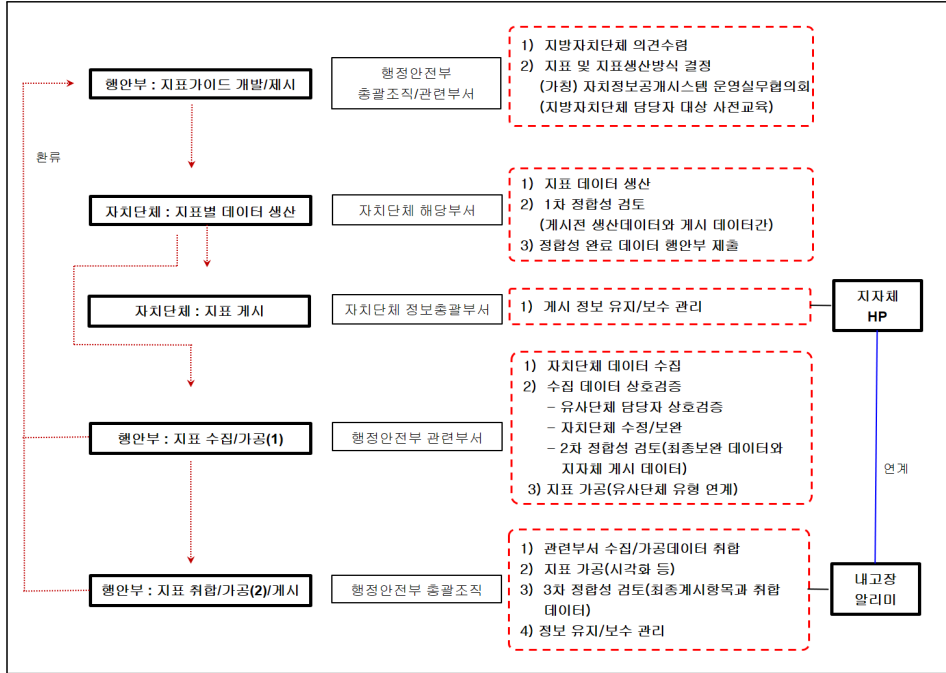
町 유형구분		산업구조		
		2차, 3차 80% 이상		2차, 3차 80% 미만
		3차 60% 이상	3차 60% 미만	
		[유형2]	[유형1]	[유형0]
인구	0 이상~5,000 미만 [유형I]	I-2 (65단체)	I-1 (51단체)	I-0 (154단체)
	5,000 이상~10,000 미만 [유형II]	II-2 (68단체)	II-1 (82단체)	II-0 (95단체)
	10,000 이상~15,000 미만 [유형III]	III-2 (55단체)	III-1 (55단체)	III-0 (36단체)
	15,000 이상~20,000 미만 [유형IV]	IV-2 (62단체)	IV-1 (33단체)	IV-0 (22단체)
	20,000 이상~ [유형V]	V-2 (97단체)	V-1 (46단체)	V-0 (5단체)

- 중장기안의 자치단체 유형화 세분시 우선적으로 고려가능한 검토변수로 인구규모(기본 특성), 산업구조(도시 산업구조 특성), 인구증감(도시 활성화 특성) 등 우선 검토 가능

(5) 정보데이터 관리체계

-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하여 3단계 정합성 검토 단계 설정
 - 정보데이터 관리체계 흐름을 통하여 자치단체, 행안부간 데이터 협력과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명시

〈정보데이터 관리체계(안)〉



(6) 총괄조직

- 행안부내 지방자치정보 총괄조직 설치
 - 단기적으로 팀단위 조직으로 관련 업무 총괄, 지표공개 정책활용 방안
 - 중장기적으로 (가칭) 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위원회 검토

(7) 이행확보

- 법적조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협력절차 명시(지방재정법 참조)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절차 법령반영(예)〉

지방자치법시행령 ○○조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지방자치정보에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개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정보 공개항목중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개항목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00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개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0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행정적 조치

- ① 정보공개이행 실태조사 및 언론공표, ② 정보합동평가 평가지표 포함, ③ 관련 학회-지방4단체협의회 세미나(토론회) 인식 확대 등 검토
- 법적 조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력 한계 불가피

(8) 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개선방안(종합)

구분		세부방안
공개목적의 설정		① 지역주민의 이해와 평가에 도움 제공 ② 자치단체의 자발적 개선의지 유도
공개시스템 구성	공개지표	[지표선정 기준] ① 목적부합성 : 위 목적 1, 2 반영 지표 ② 비교객관성 : 중앙정부의 공개목적상 주관적 평가에 의한 논란 배제, 양적 지표 한정 [지표(예시)]

구분		세부방안
	공개양식	① 비교지표형식(주민이해 및 평가 상대적 용이) ② 보고자료형식
공개시스템 운영	관리체계	○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하여 3단계 정합성 검토 단계 설정
	추진조직	① 단기간 : 행안부내 팀단위 총괄조직 ② 중장기간 : (가칭) 자치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위 설치 * 행안부-자치단체-전문가 참여
	비교집단	① 단기간 : 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기준 보완 활용 ② 중장기간 : 유사단체 세분화모형개발 적용 * 일본 유형화 참조(별도 연구 필요)
	공개장소	① 중앙정부 관리사이트(우리나라) ①-1 : 독자사이트(지방재정365) ①-2 : 종합사이트 포함(내고장알리미) : 정보량 대비 독자사이트 운영의 과비용 초래, 주민친화적 접근성 고려 ② 중앙정부 홈페이지(일본 총무성)
지방자치단체 이행확보조치	법적 조치	○ 공개절차 자치법시행령 규정(지방재정법 원용)
	행정적 조치	① 정보공개이행 실태조사 및 언론공표 ② 정보합동평가 평가지표 포함 ③ 관련 학회-지방4단체협의회 세미나(토론회) 인식 확대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제2장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 및 법체계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신설조항의 의의 11

제2절 지방자치정보의 유형 및 개념 13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 관련 법체계 18

제3장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태분석

제1절 분석설계 23

제2절 국가별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분석 24

 1. 한국 24

 2. 일본 38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49

제4장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공개목적 설정 55

제2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56

 1. 공개지표 56

 2. 공개양식 64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72

1. 비교집단	72
2. 관리체계(정보데이터 정합성 관리)	76
3. 총괄조직	77
4. 공개장소	81
제4절 관련 검토사항	83
1. 이행확보	83
2. 주민홍보	86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89
【참고문헌】	95
【부록】	96

표목차 | LIST OF TABLES

〈표 1-1〉 지방자치관련 정보공개 현황	5
〈표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7
〈표 2-1〉 지방자치법 제26조	11
〈표 2-2〉 지방자치정보의 구분	14
〈표 2-3〉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 세부규정(시행령 제4조)	17
〈표 3-1〉 지방자치정보 공개근거	25
〈표 3-2〉 행안부의 자치행정/지방재정영역 공개목적 비교	29
〈표 3-3〉 지방행정부문 공개시스템 공개항목	30
〈표 3-4〉 조직운영부문과 지방재정부문 비교집단 유형	36
〈표 3-5〉 (일본)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2 (人事行政の運営等の状況の公表)	39
〈표 3-6〉 자치행정영역 공개시스템 공개목적 비교	40
〈표 3-7〉 일본 지방행정부문 공개시스템 공개항목	41
〈표 3-8〉 분석시트 비교사항	43
〈표 3-9〉 자치행정영역 공개양식	43
〈표 3-10〉 일본 지방자치단체(시, 정)의 유사단체 유형구분	47
〈표 3-11〉 우리나라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자치정보공개 비교	49
〈표 3-12〉 한국과 일본 사례분석 비교 및 시사점	50
〈표 4-1〉 공개시스템 지표선정기준(안)	57
〈표 4-2〉 조직운영부문 공개지표	57
〈표 4-3〉 인사운영부문 공개지표(해당부서 검토사항)	58
〈표 4-4〉 의정활동부문 공개지표(해당부서 검토사항)	58
〈표 4-5〉 공개양식 대안간 비교	65
〈표 4-6〉 공개양식(예) : 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기구설치기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조직운영 : 공무원1인당 주민수 비교)	66
〈표 4-7〉 공개양식(예) : 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기구설치기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인사운영 : 장애인공무원수 및 비율)	69
〈표 4-8〉 조직운영부문의 비교집단 유형	73

〈표 4-9〉 유사(비교)집단 대안간 비교	74
〈표 4-10〉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기준 비교	75
〈표 4-11〉 운영주체 대안간 비교	80
〈표 4-12〉 공개장소 대안간 비교	82
〈표 4-13〉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절차 법령반영(예)	83
〈표 5-1〉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 종합	92

그림목차 | LIST OF FIGURES

〈그림 2-1〉 ‘공개정보’와 ‘지방자치정보’의 범위 관계	16
〈그림 2-2〉 정보공개법, 지방자치법, 자치관련 개별 법령간 관계체계	20
〈그림 3-1〉 내고장알리미 공개시스템	31
〈그림 3-2〉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의 관리체계 비교	38
〈그림 3-3〉 총무성 지방공공단체급여정보등공표시스템	44
〈그림 3-4〉 총무성 공개시스템 관리체계	48
〈그림 4-1〉 데이터관리체계 흐름도	77
〈그림 4-2〉 총괄 ‘팀’ 및 관련부서,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관계	79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약칭)에 의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 및 운영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보공개법’에 의한 ‘사전정보공개’ 제도를 통하여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 이와 함께 지방자치 관련 다양한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규정
 - 지방의회(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비, 제65조 회의, 제72조 회의록 공개 규정), 지방조직(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지방인사(지방공무원임용령 제78조 공무원 인사통계), 지방재정(지방재정법 제60조, 제60조의 2 지방재정항목 비교공시), 평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 평가결과 공개)
-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정보의 공개 및 행안부장관에 의한 시스템 구축·운영(제26조)을 규정(시행 2022년 1월)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는 지방자치관련 정보공개의 원칙을 언명하는 동시에 개별법에 의해 제시되는 각종 정보의 활용성/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정보의 개념규정 및 지방자치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공개의무) 신설에 따라 정보공개법을 비

- 릇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법령의 체계성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 지방자치정보 공개의 국내외적 운영실태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며,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둠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대상범위

- 현재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되고 있는 지방자치관련 정보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사전공표와 지방자치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공개가 혼재되어 있음

〈표 1-1〉 지방자치관련 정보공개 현황

공개분야	공개주체	관련법령	주요내용	공개장소	비고
사전정보 공개	지방자치 단체장	정보공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 행안부는 공공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제공 및 이행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종합평가 실시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의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회의(제65조) 및 회의록(제72조), 의정비(제33조, 시행령 제34조) 등 	지방의회 홈페이지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행안부장관 공개시스템 포함)
지방조직	행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 공개 ▶ 행안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음(내고장알리미에 공무원 정원 등 5개 항목 공개) 	내고장 알리미	
지방인사	행안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인사에 관한 통계를 공개 ▶ 행안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음(내고장알리미에 공무원 현원 등 15개 항목 공개) 	내고장 알리미	
지방재정	행안부장관	지방재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할 지방재정의 구체적인 항목 명시 ▶ 행안부장관은 지자체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음 	지방재정 365	
합동평가	행안부장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평가 실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 	내고장 알리미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현황 정보 	행안부 홈페이지	

-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공개는 법령상 위와 같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공개정보를 취합, 체계화하여 공개하는 것은 크게 자치행정과 지방재정 2개 영역임
 -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조직운영부문과 인사운영 2개 부문이 현재 공개중이고,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부문이 추가. 지방재정부문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독자적 공개시스템 운영중
 -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자치정보 공개시스템으로 하나의 공개시스템으로 통합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관된 체계하에 운영되어 온 지방재정영역과 달리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 노정(부문확대, 부문간 연계성 미비, 공개목적 및 지표선정 기준 상이, 비교집단 적용유무 및 적정성, 관리체계 복잡, 총괄조직 부재, 이행 확보력 미흡 등)
 - 때문에 행정안전부 통합 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앞서 사전적 단계로 자치행정영역 공개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운영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합관리의 우선단계로서 자치행정영역에 초점

(2) 내용범위

- 자치행정부문(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범위를 설정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신설의 의미와 관련 법령간 법체계 정립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태분석(국내 및 외국사례)
 - 자치정보공개 항목 및 양식의 구성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방안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활용관련 검토사항
- 내용적 범위의 구체적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연구의 내용적 범위

연구주제	세부내용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신설의 의미와 관련 법령간 법체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6조 신설 의의 -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및 유형 설정 -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공표 개별 법령, 지방자치법간 관계 정립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태분석 (국내 및 외국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내고장알리미' 운영실태분석 - (일본) '地方公共団体給与情報等公表システム(지방급 여정보공표시스템), 총무성홈페이지내' 운영실태분석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의 문제점 도출 -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개선 시사점 도출
자치정보공개 항목 및 양식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의 기본방향 설정 - 지방자치정보 공개항목(지표)의 발굴(기준 및 절차) - 지방자치정보 공개항목 발굴관련 중장기 검토사항 - 지방자치정보 공개양식 마련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주체, 법적근거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방법 (현행, 독자사이트, 행안부사이트내 운영) - 정보공개시스템 운영상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
관련 검토사항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활용제고방안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은 연구부문별로 적정 연구방법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의 연구방법을 적용함
 - 법체계성 : 문헌분석
 - 현황분석/외국사례분석 : 문헌분석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문헌분석, 관계공무원조사

제2장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 및 법체계

-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신설조항의 의의
- 제2절 지방자치정보의 개념 및 유형
-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 관련 법체계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 및 법체계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신설조항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 관련 다양한 법령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제26조)을 신설

〈표 2-1〉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제26조의 신설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재천명함과 동시에,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됨으로써 지방자치의 틀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의 통제방법 및 기존 중앙정부의 역할변화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
- 먼저, 제26조 1항의 경우,
 - 첫째,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에 대한 재천명이라는 측면과 함께,
 - 둘째,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원리 천명

-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
 - 셋째, ‘지방자치정보’를 통한 정보의 체계화 근거 마련
 - 종래 각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공개항목의 선정 및 공개방식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정보, 생산주체의 상이로 각각의 주체에 맡겨져 있던 정보(집행기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정보’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개항목의 선정, 절차, 운영 등에 있어 체계화 근거 제공
- 다음, 제26조 2항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제시
 - 소극적 역할 : 종래 감독기관으로서의 규제/감독 역할에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
 - 적극적 역할 : 자치단체간 비교평가에 기반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자치발전 조장
- 이와 같이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의 제26조 신설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재천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 방법(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과 중앙정부의 역할(행안부의 주민자율통제 지원기능)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제2절 지방자치정보의 유형 및 개념

-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정보의 포함대상에 대한 예시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정보’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내용범위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 단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라고 하여 기존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공개의무로 규정된 일부 내용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임
 -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얻어 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 경우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획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정보의 개념화는 다양한 방법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유형화/범주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정보의 개념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함

(1) [1단계] 지방자치단체 생산정보의 유형화

-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정보는 논리적으로 정보생산의 주체와 생산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가 가능함
 - 정보생산의 주체 : 공적 주체(집행기관, 지방의회) / 사적 주체(주민, 시민단체)
 - 생산정보의 성격 : 운영적 성격(인력, 재정 등) / 정책적 성격(개별 정책사업)
 - 정보생산의 주체와 생산정보의 성격을 위와 같이 구분할 경우 아래와 같이 4개의 정보 영역이 도출가능하며, 광의의 지방자치정보는 이 4가지 영역을 포괄

〈표 2-2〉 지방자치정보의 구분

구분		활동영역의 성격	
		운영(인력/재정)	정책(사업)
활동주체	자치단체 (자치단체영역)	A [집행부/의회] 조직/인력/재정 운영평가	B [집행부/의회] 사업 평가
	자치단체외 (주민영역)	C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등] 조직/인력/재정 운영평가	D [주민자치회, 시민단체 등] 사업 평가

- 즉, 지방자치는 ‘주민’과 주민의 ‘위임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정보 역시 논리상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과 위임기관 모두가 만들어내는 공적 관련정보를 포함하는 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정보는 지방자치의 관련 주체가 생산해 내는 모든 공적 정보를 포함

(2) 2단계 : 정보생산 주체의 한정

- 그러나 지방자치정보란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정보의 개념규정은 법령에 내포된 제한요인에 영향을 받게 됨
 - 현행 정보공개법이나 지방자치법은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의무대상을 공적기관으로 명시
 - 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을 공개주체로 명시
 -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 공개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보다 세분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제시
 - 따라서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의 지방자치정보는 생산주체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한정되며, 주민(민간단체 포함) 주도의 지방자치관련 활동은 지방자치정보의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지방자치정보의 범위는 위 표의 A영역과 B영역에 한정되며, 따라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주체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그 활동을 위하여 자원의 투입에서 결과의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로 규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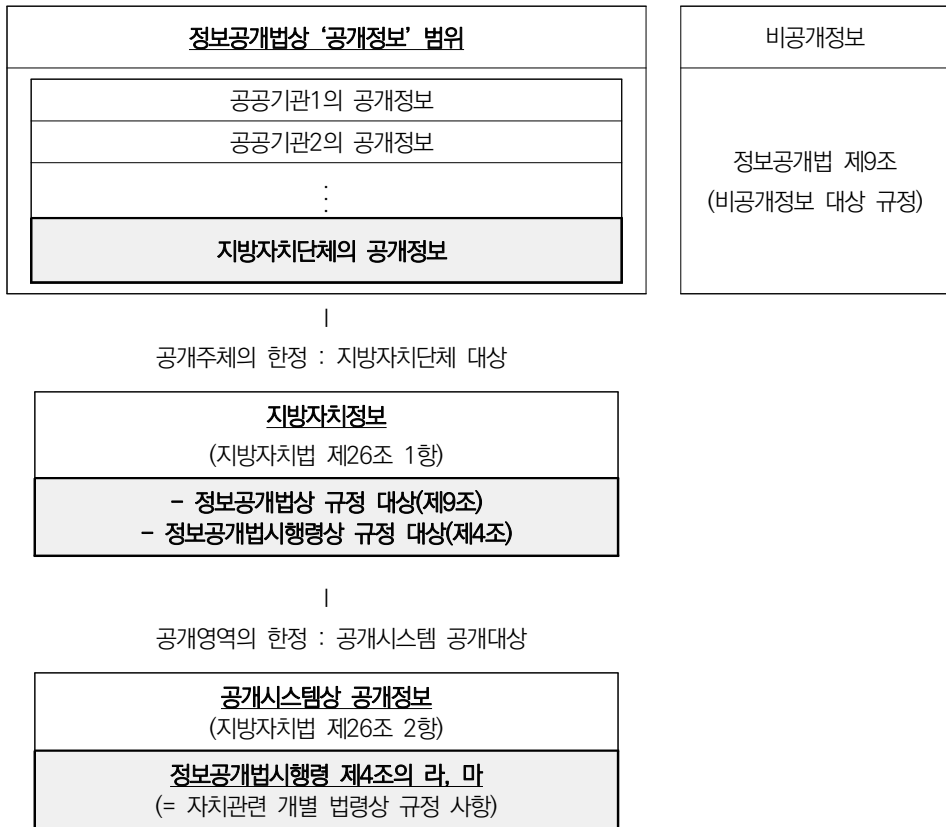
[보론] 지방자치정보의 개념과 공개시스템의 지방자치정보범위

-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에서의 지방자치정보 범위와 제2항 공개시스템의 자치정보 범위는 후자가 전자의 범위내에서 공개정보를 ‘체계적’으로 재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대상영역의 한정을 통한 범위의 제한을 의미
- 공개시스템의 경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정보의 객관성, 비교성에 대한 담보가 중요
 - 지방자치정보의 범위에 포함된 A, B영역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경우 객관성 논란이 적지만, 중앙정부가 비교공개하는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 제기 가능
 - 영역별로 볼 경우 A영역의 경우 투입요소(인력, 재정 등)로서 객관성과 비교성이 가능한 반면(양적 요소), B영역의 경우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의 경우 상당 부분 질적 요소를 내포하여 객관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대상으로 할 지방자치정보는 A영역의 정보가 기본적인 대상이 되며, B영역 자료중에서 비교가 가능한 양적 자료나 공적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자료의 경우 객관성과 비교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 가능
 - 예컨대, 집행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합동평가결과,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중 수치화가 가능한 정보 등
- 참고로 정보공개법에서 제시하는 ‘공개정보’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항의 ‘지방자치정보’, 제2항 공개시스템상의 지방자치정보 범위의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각각의 범위가 법규정상 대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층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1〉 ‘공개정보’와 ‘지방자치정보’의 범위 관계



주: 정보공개법은 제2조의 1에서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와 같이 배제적 방법을 사용[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2-3〉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 세부규정(시행령 제4조)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 관련 법체계

- 법적 ‘체계적합성’ 또는 ‘법적정당성’, ‘법적정합성’이란 입법기능에 있어 법규범 상호간 규범의 구조나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¹⁾
 - 다시 말해 법 적용에 있어 관련법간 논리적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여 상충·모순 현상을 방지해야 함
 - 법령간 관계에 있어 ‘체계적합성’이 문제되는 것은 모든 정책적 키워드가 계획적 설계를 통하여 기본법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일반적으로 개별적 수요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적용되다가 기본법이 추후 제정되거나, 기본법이 있더라도 법의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요인으로 인하여 보완적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성 내지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
- 법적체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한데,
 - 첫째, 법령간 우선 적용에 대한 관계검토로 ① 일반법과 특별법, ② 기본법과 개별법, ③ 법령간 위계 관계에 대한 검토이고,
 - 둘째, 법령간 내용적 모순의 존재여부 검토임
- 첫째, 법령간 우선적용 관계를 보면,
 - ① 일반법과 특별법
 - 정보공개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 관련 개별 법령은 모두 일반법으로서 ‘특별법’적 지위를 통한 우선관계는 없음
 - ② 기본법과 개별법²⁾

1)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11) 참조.

2) 기본법과 개별법 관계에 있어 기본법이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1) 실생활에 있어 광범위한 역할을 발휘하는 개별법령 또는 일단의 법군(예: 기본육법 통칙), (2) 동일 위계에 속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것(예: 조세감면에 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 (3) 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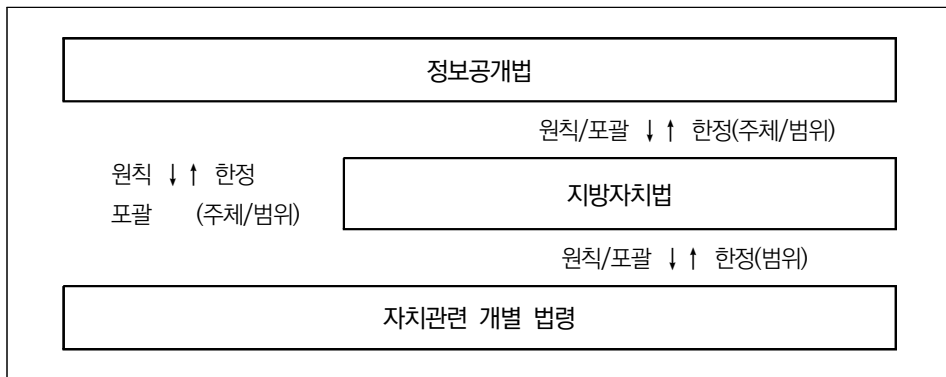
- 기본법은 특정 분야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 분야 법체계 정립의 기준이 되는 법령임
 -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은 각각 정보공개분야와 지방자치분야에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보공개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자치법은 정보공개부분에 있어서는 개별법적 위치를 가짐. 이러한 점은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 1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과 자치관련 법령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세부적 공개대상으로 시행령에 자치관련 개별법령의 공개대상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정책에 있어서 정보공개법이 자치 관련 개별법령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
 - 지방자치법과 자치 관련 개별법령의 경우 지방자치와 그 세부 분야의 관계로서 기본법적 위치와 개별법령으로서의 관계를 가짐
- ③ 법령간 위계 관계
- 법형식과 관련하여 법(법률), 시행령, 규칙 등의 위계관계를 의미하며, 위계관계에서의 우선 적용문제는 없음
- 둘째, 법령간 내용적 모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① 내용이 모순적 관계인가, ② 내용이 보완적 관계인가 하는 것임
 -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과 ‘자치관련 개별 법령’,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자치관련 개별 법령’간 정보공개에 대한 조문을 비교해 보면, 공개주체와 공개대상적 측면에서 각각은 모순적·상충적 관계를 갖지 않고, 포괄적/원칙적-세분화/보완적 관계를 구성함을 볼 수 있음
 - ‘정보공개법’은 기본법적 성격으로 정보공개의 원칙과 포괄적 규정을 담

분한다(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본 연구의 경우 세 번째 의미로 사용한다.

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개주체를 제한적으로(지방자치단체로 한정)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특정 공개주체(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개정보의 범위내에서 일정 정보를 공개방식을 달리하여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즉 ‘지방자치법’은 정보공개법의 지방자치단체 공개대상중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선별하고, 체계적으로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법’과 ‘자치관련 개별 법령’의 관계 역시 지방자치정책의 기본 법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법’에 그동안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온 지방자치정보의 공개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정보의 각 구성요소별 공개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보완적 관계 구성

〈그림 2-2〉 정보공개법, 지방자치법, 자치관련 개별 법령간 관계체계



제3장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태분석

제1절 분석설계

제2절 국가별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분석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제1절 분석설계

-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 관련정보의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는 한국과 일본, 2개국이며, 양자 모두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은 앞서 연구범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영역의 공개시스템 구축과 운영 개선에 초점이 있는 만큼, 자치행정영역 공개시스템 사례분석에 한정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현 자치행정영역 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을, 그리고 일본의 경우 총무성의 인사/급여정보시스템을 분석대상으로 함³⁾
- 다음 분석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사례분석과 사례간 비교분석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
 - 먼저, 각각의 사례를 법적근거(이행확보 포함), 공개시스템 구성요소(공개목적, 공개지표, 공개양식), 공개시스템 운영요소(비교집단, 총괄조직, 관리체계, 공개장소)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
 - 둘째, 이들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사례대상간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 도출

3)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개시스템 운영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지방정부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별첨]에서 참고적으로 소개.

제2절 국가별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분석

1. 한국

(1) 개요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정보 관련 공개시스템은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2개 시스템으로 운영
 - ‘지방행정부문’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인사운영에 대한 (비교)지표 공개 (단,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는 조직운영이나 인사운영이외에 지역발전적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 종합정보제공 사이트 성격)
 - ‘지방재정부문’ 역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이트 ‘지방재정 365’를 통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현황 및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영역에 대한 공개시스템은 앞서 기술한 자치관련 개별 법령들을 근거로 함
 - 지방재정영역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공개와 관련된 항목과 절차가 상세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법령에 공개관련 구체적 항목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이행확보 측면에서 볼 경우 지방재정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표 3-1〉 지방자치정보 공개근거

부문	(법적) 근거	
지방 조직	<p>[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p>	
지방 인사	<p>[지방공무원임용령]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4.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임용령 제78조) 가. 공개 항목 ○ 공무원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 공무원 현원 - 직종별 현원, 직렬별 현원 ○ 인사운영 현황 - 신규임용 인원, 퇴직인원, 징계 인원 - 장애인공무원, 여성공무원 ○ 후생복지 현황 - 후생복지 사업 내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나. 통계산출 기준 ○ 공무원 시험은 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현원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함 ○ 인사운영에 관한 통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p>

부문	(법적) 근거	
		<p>※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insta.mois.go.kr)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과의 항목별 통계의 정합성을 매월 체크하여야 함</p> <p>*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 공지사항>매뉴얼 참조</p> <p>다. 공개시기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시험에 관한 통계는 해당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local.gosi.go.kr)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유지 ○ 현원 및 인사운영 통계는 매년 1회, 익년 5월 이전에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최소한 3년 이상 유지 ○ 자치단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사통계를 통합하여 내고장알리미(laiis.go.kr)의 인사운영란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지방 의회	<p>[지방자치법] 제33조 의정비, 제65조 회의, 제72조 회의록 공개 규정</p>	
평가	<p>[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 평가결과 공개</p>	
지방 재정	<p>[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p>[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부문	(법적) 근거
	<p>6. 지역통합재정통계</p> <p>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정보</p> <p>8. 중기지방재정계획</p> <p>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p> <p>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p> <p>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p> <p>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p> <p>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p> <p>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p> <p>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p> <p>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p> <p>가. 교부현황</p> <p>나. 성과평가 결과</p> <p>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p> <p>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p> <p>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p> <p>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p> <p>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p> <p>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삭제</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부문	(법적) 근거
	<p>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p>

(3) 구성요소

① 공개목적

- 공개목적에 대하여 내고장알리미의 각 해당화면에서 조직운영의 경우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제시하고 있고, 인사운영의 경우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한다고 제시
 -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누구’에게, ‘왜’라는 측면에서 명확성과 구체성 결여
 -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재정영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공시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자치행정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행안부의 공개목적 설정 필요

〈표 3-2〉 행안부의 자치행정/지방재정영역 공개목적 비교

자치행정영역	지방재정영역
[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의정활동] X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및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② 공개항목

-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조직운영 5개 지표, 인사운영 15개 지표를 공개

〈표 3-3〉 지방행정부문 공개시스템 공개항목

조직운영부문	인사운영부문
(1) 공무원정원 (2) 과장급이상 비율 (3) 공무원1인당 주민수 (4)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5)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1) 공무원 현원 (2) 장애인공무원 현황 (3) 공무원 1천명당 비위징계비율 (4)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현황 (5) 여성공무원 현황 (6) 여성관리자 공무원 현황 (7) 연령 현황 (8) 신규임용 현황 (9) 퇴직 현황 (10) 휴직 현황 (11) 승진인원 (12) 파견인원 (13) 인사교류인원 (14) 시간선택제 전환 (15) 임기제 현황

출처 : 내고장알라미 사이트.

③ 공개양식

○ 공개지표에 대하여 집단간 평균값 제시

- 조직운영부문의 경우 비교집단(9개 유형)내 평균값을 통하여 비교
- 인사운영부문의 경우 시도단위내 자치단체별 수치 및 평균값 제시

○ 조직운영부문

[전국지자체현황 - 조직운영]

- ① 공개시스템 개요 소개
 - 공개지표(클릭 가능)
 - 공개목적, 조사대상 범위, 공개항목, 시기 등 개요 설명
- ② 비교자치단체 유형 및 최대최소값 공개
 - 비교유형을 위한 기구설치기준표 제시
 - * 그러나 유형 적용은 1차 유형화에 기초한 세부유형화가 아니라, 1차 유형(9개 유형)만을 사용함으로써, 비교의 실익 감소
 - 각 지표별 최대최소값 자치단체 제시

[전국지자체현황 - 조직정보]

-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표 링크

○ 인사운영부문

[전국지자체현황 - 인사운영]

- ① 공개시스템 소개 및 공개지표 제시
 - 공개시스템 운영절차에 대한 간단 소개
 - 공개지표(클릭 가능)
- ② 지표개요, 연도별 추이, 광역단위 지표값 공개
 - 지표개요 : 지표의 정의, 의미, 참고사항 등 제시
 - 연도별 추이
 - 광역단위 지표값(광역자치단체 클릭 ->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지표값 제시 사이 트로 이동)
- ③ 광역자치단체내 자치단체 지표값 제시
 - * 유사자치단체간 비교 **없음**

〈그림 3-1〉 내고장알리미 공개시스템

1) 조직운영부문

(조직운영 클릭)

① 공개시스템 개요 소개

작성기관 및 부서 (연혁번호)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제도과 (044-205-3314)
보고목적 및 활용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조사 대상 범위	보고종계
조사 대상 지역	전국
조사 대상 규모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
보고 항목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운영 비율
공표	반기
공표 시기	작성기준년도 상반기, 하반기 표공무원 현황 > 조직적 현황의 경우에는 매년 12월에 선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기 위해서는 연말이 지나야 합니다.
공표 범위	전국

(공개지표 클릭)

② 비교자치단체 유형 및 최대최소값 공개 공무원 정원

자료개요

기구설치기준 보기 >

2020년 12월 결과출력 목록

연번	구분	총원 평균(단위: 명)	일반직 정원 평균(단위: 명)	복지직 정원 평균(단위: 명)	소방직 평균(단위: 명)
1	특별광역시	6,721	3,853	180	2,689
2	도	6,982	2,628	149	4,204
3	50만 이상시	2,629	2,133	439	-
4	50만 미만 일반시	981	828	153	0
5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1,305	1,103	202	0
6	5만 이상 군	800	692	108	0
7	5만 미만 군	620	547	72	0
8	특별시 자치구	1,435	1,142	292	0
9	광역시 자치구	866	690	176	0

(기구설치기준 보기 클릭)

구분	기구설치기준					
	1	2	3	4	5	6
1 (특별·광역시)	서울특별시	350~400만 300~350만	250~300만	200만~250만	200만 미만	세종시
2 (도)	경기도	300~400만	200~300만	100~200만	제주도	
3 (인구50만 이상시)	120만 이상	100~120만	90~100만	70~90만	50~70만	50만 이상 (구형지)
4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30~50만	20~30만	15~20만	10~15만	10만 미만	
5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30~50만	20~30만	15~20만	10~15만	10만 미만	
6 (5만 이상 군)	20만 이상	15~20만	10~15만	5~10만		
7 (5만 미만 군)	3~5만	3만 미만				
8 (특별시 자치구)	특별시 자치구					
9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30만~50만	10~30만	10만 미만		

※ 2018년 이전의 외곽역시 자치구 기구설치기준 2 (15만~50만), 기구설치기준 3 (10~15만)입니다.
※ 인구 15만미만 군의 경우 같은 기구설치기준을 적용받으나, 실제연구 기준으로 세분화되었음.

총원 유형별 최대·최소(2020년 12월)

(단위: 명)

결과출력

구분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역시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5만 이상군	5만 미만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최대 지자체명	18,708 서울 [분청]	14,778 경기 [분청]	5,001 경남 창원시	1,645 경기 파주시	1,871 전남 여주시	1,047 울산 울주군	805 전남 신안군	1,722 서울 강남구	1,298 인천 부평구
최소 지자체명	2,298 세종 [분청]	4,375 충북 [분청]	1,569 경기 시흥시	401 충남 계룡시	916 경북 상주시	685 경북 영천시	398 경북 울릉군	1,166 서울 금천구	499 부산 중구
평균	6,721	6,982	2,629	981	1,305	800	620	1,435	866

일반직 정원 유형별 최대·최소(2020년 12월)

(단위: 명)

결과출력

구분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역시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5만 이상군	5만 미만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최대 지자체명	11,137 서울 [분청]	4,611 경주 [분청]	3,366 경남 창원시	1,396 경기 파주시	1,637 전남 여주시	910 울산 울주군	708 전남 신안군	1,397 서울 강남구	1,010 인천 남동구
최소 지자체명	1,634 세종 [분청]	1,785 충북 [분청]	1,289 경기 시흥시	369 충남 계룡시	808 충남 보령시	573 충남 금산군	370 경북 울릉군	951 서울 금천구	411 부산 중구
평균	3,853	2,628	2,133	828	1,103	692	547	1,142	690

복지직 정원 유형별 최대·최소(2020년 12월)

(단위: 명)

결과출력

※ 개별 자치단체 링크는 [내고장정보 - 조직정보] 클릭



(조직정보 클릭)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표 링크



2) 인사운영부문

(인사운영 클릭)

① 공개시스템 소개 및 공개지표 제시

인사운영 |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 신뢰성 있는 통계 분석·비교를 위한 **통계산출 기준 공개**
-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핵심 공개지표 발굴
- 인사전문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통계협의회**」 운영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61

(공개지표 클릭)

② 지표개요, 연도별 추이, 광역단위 지표값 공개

공무원 현원 | 매년 8월 공개범위 시·군·구

■ 지표개요

- **정의(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 현원 현황
- **내涵(연미분석)**
 - 매년 12.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중인 국가직공무원(교위공무원)은 포함
 - 별도장원(유직, 파견 등), 시간강사제원(계약공무원, 임시임기제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음
- **참고사항**
 -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송인통계

담당부서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61)

■ 연도별 추이

연도	단위명
2015년	296,272
2016년	303,401
2017년	310,654
2018년	322,862
2019년	337,084
2020년	322,182



(4) 운영요소

① 비교집단

- 앞서 공개양식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조직운영부문은 비교집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사운영부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조직운영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비교집단의 경우도 비교집단내 편차가 커서, 비교의 실익을 가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표 3-4〉 조직운영부문과 지방재정부문 비교집단 유형

법적 지위	조직운영부문 유형							지방재정부문 유형			
	구분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						구분			
		1	2	3	4	5	6				
특별/광역시	1 (특별*광역시)	서울특별시	350~400만 300~350만	250~300만	200~250만	200만 미만	세종시	특별/광역시			
도	2 (도)	경기도	300~400만	200~300만	100~200만	제주도	도				
시	3 (인구50만 이상시)	120만 이상 (1)	100~120만 (3)	90~100만 (1)	70~90만 (2)	50~70만 (4)	50만이상 (구 설치X) (6)	시-1 (16)	시-2 (20)	시-3 (19)	시-4 (20)
	4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30~50만 (6)	20~30만 (7)	15~20만 (4)	10~15만 (4)	10만 미만 (4)					
	5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30~50만 (6)	20~30만 (8)	15~20만 (4)	10~15만 (11)	10만 미만 (4)					
군	6 (5만 이상 군)	20만 이상 (2)	15~20만 (1)	10~15만 (3)	5~10만 (27)			군-1 (21)	군-2 (20)	군-3 (20)	군-4 (21)
	7 (5만 미만 군)	3~5만 (32)	3만 미만 (17)								
자치구	8 (특별시 자치구)	특별시자치구 (25)						구-1 (12)	구-2 (13)	구-3 (22)	구-4 (22)
	9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5)	30~50만 (17)	10~30만 (18)	10만 미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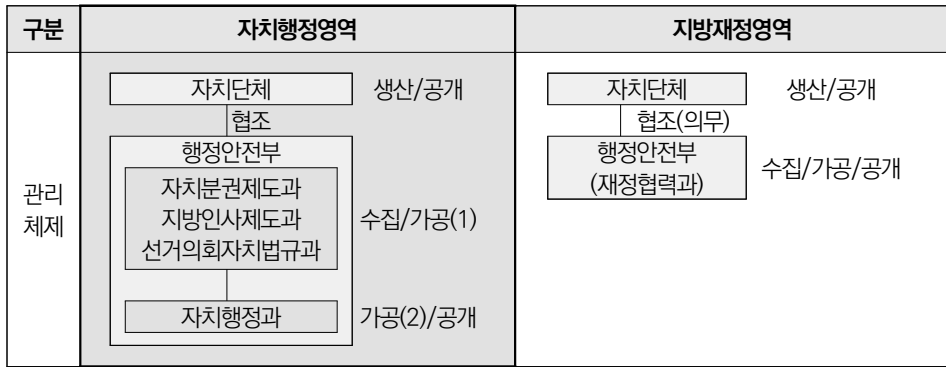
		조직운영부문 유형	지방재정부문 유형
비 고	기 준	인구규모, 특정설치목적(50만 미만 도농복합시,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 행정계층 유무(행정구 미설치 단체)	인구규모(30%), 최근5년 인구증감률(10%), 재정력지수(시·군), 재정자립도(자치구)(30%), 일반회계예산규모(30%)
	활 용	저치단체 조직기구 설치 근거로 활용	동일 법적지위 자치단체내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를 그룹핑하여 재정상황 비교/평가

- 한편, 지방재정영역의 공개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치단체 비교집단 유형(14유형)과 비교해 보면, 위 표에서 보듯이 각각의 비교집단 유형은 특정 도시(자치단체)의 객관적 도시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조직운영부문의 경우 행정기구 설치기준 적용을 위한 인구규모에 초점을, 지방재정영역의 경우 인구규모를 포함하면서도 자치단체간 재정적 동질성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부여
- 즉, 행정안전부내 2개 부문에서 사용하는 자치단체 비교집단은 각각 부서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어, 주민입장에서 볼 때 자치단체의 보편적 비교집단 유형화에는 한계 보유

② 총괄조직 및 정보데이터 관리체계

- 자치행정영역의 경우 총괄조직이 없이, 관련부서의 담당자간 협업(조직운영-자치분권제도과, 인사운영-지방인사제도과, 의정활동-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공개사이트운영-자치행정과)으로 운영
 - 총괄조직 부재로 체계적 공개지표 선정 및 공개양식의 통일이 불가하며, 각각 지표선정과 양식을 마련하고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이를 취합 공개하는 상황
- 이 때문에 정보데이터의 관리체계 역시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성 역시 높음

〈그림 3-2〉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의 관리체계 비교



③ 공개장소

○ 관련기관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별도 운영 사이트 ‘내고장알리미’
- 조직운영부문 자치단체 공개사이트에 링크(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서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와 연계)
- 인사운영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별도 연계 없음

2. 일본

(1) 개요

-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중 중앙정부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공개시 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2 개 시스템이 있음
 - ‘자치행정영역’은 총무성 홈페이지내 ‘지방자치단체 인력/급여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 및 급여상황에 대한 자료를 공동양식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영역’ 역시 총무성 홈페이지내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현황 및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동 양식에 의하여 공개하고 있음⁴⁾

(2)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영역에 대한 공개시스템은 (일본)지방공무원법(제 58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 인사평가, 급여, 근무시간 및 그 밖의 근무조건, 휴업, 신분 및 징계, 복무, 퇴직관리, 연수 및 복지, 이익보호 등 인사행정의 운영상황”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총무성)의 공표시스템 운영은 2005년 6월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5(經濟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2005)’(2005년 6월 21일 각의 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공표시스템 구축 결정에 근거
 - 이에 따라 총무성은 총무성홈페이지에 지방공공단체급여정보등공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 3월부터 운영

〈표 3-5〉 (일본)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2 (人事行政の運営等の状況の公表)

제58조의 2 임명권자는 다음 조에서 규정하는 자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하여 직원(임시적으로 임용된 직원 및 비상근직원을 제외한다)의 임용, 인사평가, 급여, 근무시간 및 그 밖의 근무조건, 휴업, 신분 및 징계, 복무, 퇴직관리, 연수 및 복지, 이익보호 등 인사행정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하여 업무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전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리하여, 그 개요 및 전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공표하여야 한다.

4) 두 가지 부문중 우리나라 지방행정부분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차원에서 일본의 지방행정부분 공개시스템에 한정하여 분석함.

[참고] 재정정보시스템

- 지방재정부문에 대한 공개시스템 운영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별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부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일본)「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지방자치법 제243조의 3(재정상황의 공표 등)

제243조의 3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산,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고,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221조제3항의 법인에 대해 매 사업연도에 정령으로 정하는 그 경영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제221조제3항의 신탁에 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계산기마다 당해 신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상황을 설명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전년도 결산을 제출받은 후 신속히 실질적자비율, 연결실질적자비율, 실질공채비율 및 장래부담비율(이하 "건전화판단비율"이라 한다)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감사위원의 심사에 붙이고, 그 의견을 붙여 해당 건전화판단비율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함께, 당해 건전화판단비율을 공표하여야 한다.

(3) 구성요소

① 공개목적

- 일본의 경우 공개목적에서 대상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주민(국민)에게는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관리 상황의 공개, 자치단체에게는 상호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 지향

〈표 3-6〉 자치행정영역 공개시스템 공개목적 비교

일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관리 상황을 국민, 주민에게 공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p>[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p> <p>[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p> <p>[의정활동] X</p>

② 공개항목

- 일본 자치행정영역의 공표항목은 인사/급여측면에 초점을 두고, 크게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세부 공개항목을 규정

〈표 3-7〉 일본 지방행정부문 공개시스템 공개항목

구분	공개항목	비고	
1. 총괄	(1) 인건비(보통회계결산)		
	(2) 직원급여비(보통회계결산)	[비교] 유사단체 평균일인당 급여비 비교	
	(3) 라스파이레스지수	[비교] 유사단체 / 국가 / 최근4년간 비교 [기술] 지수변화 이유 및 전망 작성	
	(4) 급여 개정상황	1) 월례급	[비교] 국가 급여개정률
		2) 특별급(기말·근연수당)	[비교] 국가 연간지급월수
	(5) 급여제도의 종합적 재검토 실시 상황	1) 급여표 재검토	[기술] 실시내용 작성(평균인하율, 실시(실시예정) 시기, 경과조치의 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미실시의 경우 그 이유)]
		2) 지역수당 재검토	[비교] 국가 / 연도별 지급비율
3) 기타 재검토 내용		[기술] 기타 사항 작성	
(6) 특기사항			
2. 직원 평균급여 월액, 초임급 등	(1) 직원평균연령, 평균급료월액 및 평균급여월액	1) 일반행정직	[비교] 국가 / 유사단체 / 민간 평균 비교
		2) 기능노무직	[비교] 국가 / 유사단체 / 민간 평균 비교
		3) 고등학교(특별지원·전수·각종) 교육직	[비교] 유사단체 평균 비교
		4) 초·중학교(유치원)교육직	[비교] 유사단체 평균 비교
		5) 경찰직	[비교] 국가 / 유사단체 평균 비교
		6) ○○직	
	(2) 직원 초임급	[비교] 국가 비교	
(3) 직원의 경험년수별·학력별 평균급료월액			
3. 일반행정직 직급별직원수 등	(1) 일반행정직 직급별 직원수 및 급료표	[비교] 연도별 직급구성비 비교	
	(2) 국가와의 급료표카드 비교표	[비교] 국가 비교	
	(3) 승급시 인사평가의 활용 상황		

구분	공개항목	비고
4. 직원수당	(1) 기말수당 · 근면수당	[비교] 국가 비교
	(2) 퇴직수당	[비교] 국가 비교
	(3) 지역수당	[비교] 국가 지급율(가정) 비교
	(4) 특수근무수당	
	(5) 시간외근무수당	
	(6) 기타수당	[기술] 국가제도와와의 차이 및 동일점 작성
5. 특별직 보수	지사/부지사, 의장/부의장/의원, 급료, 보수, 수당, 퇴직수당 등	
6. 직원수	(1) 부문별 직원수와 주요 증감이유	[기술] 부문별 직원수 증감이유 작성
	(2) 연령별 직원구성	
	(3) 직원수 추이	[비교] 최근 5년간 비교
7. 공영기업직원	사업별 직원급여비, 직원 평균연령, 기본급 및 평균월수액, 직원수당 등 (※ 위 2, 4와 동일 형식)	

출처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내 공개양식을 재편집(원본 내용은 별첨 참조). 비교 부분은 비교와 의견기술 측면에서의 특징을 서술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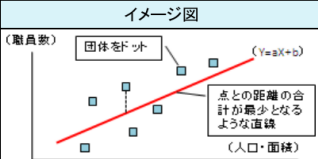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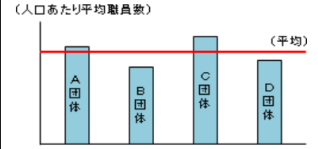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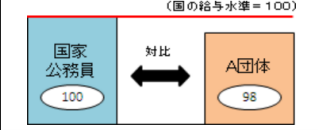
- 공개항목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인사/조직운영에 있어 사전적인 제한규정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항목은 없으며,
 - 직원수 및 보수의 국가, 유사단체, 민간부문과의 비교와
 - 규모변화 및 제도운영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의견기술방식 활용

③ 공개양식

- 공개양식은 총무성에서 공동양식(2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동양식을 기입하여 제출
 - 공개양식(1) : ‘○○시의 급여 · 정원관리 등에 대하여’
 - [별첨1] 참조
 - 공개양식(2) : ‘참고지표에 의한 분석시트’
 - [별첨1]의 공개항목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3개 지표를 대상으로 도표화
 - 분석시트 활용(예)는 [별첨2] 참조

〈표 3-8〉 분석시트 비교사항

- 보통회계부문 직원수 : 정원회귀지표 활용
- 일반행정부문 직원수 : 유사단체비교 활용
- 급여수준 : 라스파이레스지수 활용(국가공무원의 평균급여액을 100으로 하여 해당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평균급여액을 산정한 지수)

○簡素で分かりやすい参考指標 → 「定員回帰指標」「類似団体比較」 ○定員管理の取組をよりの確に把握 → 「普通会計」「一般行政部門」の両面で分析 ○給与を含めた人事管理全体の観点から分析 → 「ラスパイレス指数」を追加	
参考指標の説明	イメージ図
(1) 普通会計職員数の状況(定員回帰指標) 人口・面積と現状の職員数の相関関係を回帰分析という手法により分析し、導出した方程式による試算職員数と実際の職員数を比較したものです。 <small>※この指標は分かりやすさを重視していることから、個々の団体ごとの地域特性や個別課題は考慮されていません。 ※東京都の人口規模は他団体に比べて極めて大きいため、除外しています。</small>	
(2) 一般行政部門職員の状況(類似団体比較) 類似団体の人口あたり平均職員数(道府県は人口10万人、指定都市は人口1万人)と実際の職員数を比較したものです。なお、道府県については、各団体の人口規模前後5団体ずつを類似団体と見なして比較しています。 <small>※この指標は分かりやすさを重視していることから、個々の団体ごとの地域特性や個別課題は考慮されていません。 ※東京都の人口規模は他団体に比べて極めて大きいため、除外しています。</small>	
(3) 給与水準の状況(ラスパイレス指数) 国家公務員の給与水準を100として、地方公務員の給与水準を対比したものです。具体的には、地方公共団体の一般行政職の給料額(本給)と、国の行政職俸給表(-)適用職員の俸給額(本給)を、学歴別、経歴年数別に対比させて算出しています。なお、ラスパイレス方式という計算方法を用いていることから「ラスパイレス指数」と呼ばれています。	

〈표 3-9〉 자치행정영역 공개양식

	공개양식(1) ‘○○시의 급여·정원관리 등에 대하여’	공개양식(2) ‘참고지표에 의한 분석시트’
구성 방식	공동양식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 및 급여상황에 대하여 각 항목별 수치, 특정 항목의 국가 및 유사단체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 ○ 별첨1 공개양식 참조	좌측의 공개항목중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3개 지표를 대상으로 시각적 도표화 ① 보통회계부문 직원수 ② 일반행정부문 직원수 ③ 급여상황
대상	전체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기초자치단체(시정도시)

- 공개양식의 대상은 공개양식(1)의 경우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개양식(2)의 경우 보통회계부문 직원수에 대한 정원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도도부현과 지정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 공개하고 있음

〈그림 3-3〉 총무성 지방공공단체급여정보등공표시스템

① 시스템 개요 소개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the 'Local Public Entities Salar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地方公共団体給与情報等公表システム). The browser address bar shows the URL: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j-k_system/index.html. The page features a blue header with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logo and navigation links. Below the header is a menu with categories like 'Introduction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Public Information', 'Policy',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gulatory Information', 'Budget and Accounting', 'Application and Procedure', and 'Policy Evalu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地方公共団体給与情報等公表システム' and includes a '概要' (Summary) section. The summary text explains the system's purpose: to provide a uniform format for disclosing salary information of local public entities, enabling comparison and analysis across the country. It lists various data points such as salary index changes, public employee salaries, and employee numbers.

地方公共団体給与情報等公表システム

< 概要 >

地方公務員の給与や定員管理の状況については国民・住民にその状況が明らかになり、住民自治に基づく適正化が推進されることが重要です。ここでは、地方公共団体の協力を得て、以下に掲げるような個々の団体の情報を各団体が総務省で示した統一の様式でホームページに公表し、それとリンクさせることにより、全国の地方公共団体 相互間で比較や分析が可能となるようにしています。

- ・ ライフインデックスの変化と全国平均や類似団体との比較グラフ(平成24年度より参考値を追加)
- ・ 人事委員会勧告における公民給与の比較
- ・ 一般行政職、教育職などの職種毎の給与の状況と類似団体や国との比較(平成19年度より技能労働職については、民間の類似職種との比較を追加)
- ・ 特殊勤務手当も含め全ての手当の状況
- ・ 級別職員数の状況を示すグラフ
- ・ 特別職の報酬等の状況(退職手当も含む)
- ・ 定員の類似団体との比較、年齢別の人員構成グラフ等
- ・ 公営企業職員についても、上記に準じて公表

[都道府県](#)、[政令指定都市](#)、[市町村](#)(特別区を含む; 都道府県のホームページよりリンク)ごとに、定員・給与の情報を公開しているホームページへリンクしています。

② 공표양식

공표양식

- 平成18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19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2~23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4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5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6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7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8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29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平成30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令和元年度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 令和2年度(舊制)
 都道府県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市区町村の [公表様式とその説明](#)

③ 유사자치단체 유형

市区町村의類似団体(令和2年度)

- 類似団体の区分
 指定都市, 中核市, 移行時特別市, 特別区はそれぞれ区分
 市区町村の類似団体は, 人口と産業構造(産業別就業人口の構成比)により, 下表のとおり, 一般市については16類型, 町村については15類型に分類

類似団体の区分名又は類型(青字部分)をクリックすると, その類型に属するすべての団体名が表示されます。

[\(指定都市\)20団体](#)

[\(中核市\)50団体](#)

[\(移行時特別市\)25団体](#)

(一般市 697団体)

産業構造		Ⅱ次, Ⅲ次90%以上		Ⅱ次, Ⅲ次90%未満	
		Ⅲ次65%以上	Ⅲ次65%未満	Ⅲ次65%以上	Ⅲ次65%未満
		類型0	類型2	類型1	類型0
人口	0以上~ 50,000未満 類型I	I-0 (38団体)	I-2 (78団体)	I-1 (128団体)	I-0 (38団体)
	50,000以上~ 100,000未満 類型II	II-0 (24団体)	II-2 (88団体)	II-1 (98団体)	II-0 (122団体)
	100,000以上~ 150,000未満 類型III	III-0 (51団体)	III-2 (30団体)	III-1 (272団体)	III-0 (112団体)
	150,000以上~ 類型V	IV-0 (26団体)	IV-2 (19団体)	IV-1 (55団体)	IV-0 (107団体)

[\(特別区\)23団体](#)

... 町 15유형

④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표 링크

用語集

<各地方公共団体の公表ページ>

(都道府県)

北海道	青森県	岩手県	宮城県
秋田県	山形県	福島県	茨城県
栃木県	群馬県	埼玉県	千葉県
東京都	神奈川県	新潟県	富山県
石川県	福井県	山梨県	長野県
岐阜県	静岡県	愛知県	三重県
滋賀県	京都府	大阪府	兵庫県
奈良県	和歌山県	鳥取県	島根県
岡山県	広島県	山口県	徳島県
香川県	愛媛県	高知県	福岡県
佐賀県	長崎県	熊本県	大分県
宮崎県	鹿児島県	沖縄県	

(指定都市)

札幌市	仙台市	さいたま市	千葉市
横浜市	川崎市	名古屋市	京都市
静岡市	浜松市	名古屋市	京都府

... 시정촌

(4) 운영요소

① 비교집단

- 일본의 경우 총무성이 자치단체에 대한 유사(비교)집단 모형을 개발
 - 총무성이 공개하는 자치행정영역 및 지방재정영역 공히 비교집단유형으로 활용
- 비교집단은 유형화가 불가능하여 단일집단으로 비교하는 비유형화단체의 市와 町을 대상으로 인구규모와 산업구조특성변수를 조합하여 유형화
 - 비유형화단체 : 도도부현,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특별구, 촌
 - 유형화 : 시, 정

〈표 3-10〉 일본 지방자치단체(시, 정)의 유사단체 유형구분

市 유형구분		산업구조			
		2차, 3차 90% 이상		2차, 3차 90% 미만	
		3차 65% 이상	3차 65% 미만	3차 55% 이상	3차 55% 미만
		[유형3]	[유형2]	[유형1]	[유형0]
인구	0 이상~50,000 미만 [유형I]	I-3 (36단체)	I-2 (78단체)	I-1 (128단체)	I-0 (35단체)
	50,000 이상~100,000 미만 [유형II]	II-3 (84단체)	II-2 (86단체)	II-1 (68단체)	II-0 (12단체)
	100,000 이상~150,000 미만 [유형III]	III-3 (51단체)	III-2 (30단체)	III-1 (22단체)	III-0 (1단체)
	150,000 이상~ [유형IV]	IV-3 (32단체)	IV-2 (19단체)	IV-1 (5단체)	IV-0 (0단체)

町 유형구분		산업구조		
		2차, 3차 80% 이상		2차, 3차 80% 미만
		3차 60% 이상	3차 60% 미만	
		[유형2]	[유형1]	[유형0]
인구	0 이상~5,000 미만 [유형I]	I-2 (65단체)	I-1 (51단체)	I-0 (154단체)
	5,000 이상~10,000 미만 [유형II]	II-2 (68단체)	II-1 (82단체)	II-0 (95단체)
	10,000 이상~15,000 미만 [유형III]	III-2 (55단체)	III-1 (55단체)	III-0 (36단체)
	15,000 이상~20,000 미만 [유형IV]	IV-2 (62단체)	IV-1 (33단체)	IV-0 (22단체)
	20,000 이상~ [유형V]	V-2 (97단체)	V-1 (46단체)	V-0 (5단체)

출처 : 総務省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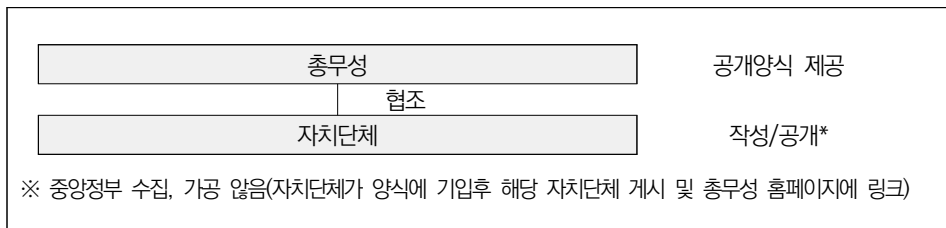
② 총괄조직 및 관리체계

○ 총괄조직은 총무성 인사과 ‘급여능률추진실’임

- 총무성 조직규칙(総務省組織規則)에 따른 급여능률추진실의 기본 업무는 (1)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 및 교육연수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2)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급여, 정원 및 교육연수에 관한 행정의

- 협력 및 기술적 조언에 관한 것임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지방공무원 급여/정원/인재육성 등 추진상황 조사, 지표공개, 검토사항 통지, 관련 연구회 운영 등을 수행
- 관리체계의 경우 우리와는 반대로 총무성이 공동양식을 제시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해당 양식에 맞추어 기입한 후 총무성내 공개시스템 해당 자치단체란에 링크
- 따라서 중앙정부가 홈페이지에 자치단체의 정보를 공동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하지만, 중앙정부가 수집된(링크된) 공개정보를 별도로 검증, 가공하지 않는 점에서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는 발생 않음

〈그림 3-4〉 총무성 공개시스템 관리체계



③ 공개장소

- 관련기관 홈페이지
- 총무성 홈페이지(도도부현, 시구정촌 공개 링크)
 - 각 도도부현 홈페이지(총무성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개시스템 및 해당 시구정촌 공개 링크)
 - 각 시구정촌 홈페이지(총무성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개시스템 링크)
- 공개장소(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링크를 통하여 이용 원활화 모색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 한국의 자치행정영역의 사례를 일본과 비교하기 앞서 우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부문 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와 참고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줌

〈표 3-11〉 우리나라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자치정보공개 비교

		자치행정영역			지방재정영역		
공개부문		[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 + α			[지방재정]		
공개목적		[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의정활동] X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및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		
구성	지표 선정	비교지표	현황지표	X	비교지표		
	공개양식	지표중심	지표중심	X	지표중심		
운영	비교집단	9유형	X	X	14유형		
	관리체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자치단체 협조 </div> 생산/공개		행정안전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div> 자치행정과	자치단체 협조(의무)	생산/공개	
					수집/가공(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수집/가공/공개
					가공(2)/공개		
총괄조직	X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행정과 담당자간 협업)			행안부 재정협력과			
공개장소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365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개별법령(행안부장관 공개)			지방재정법			
이행확보	X			지방재정법 (자료제공 등 절차 규정)			

-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공개시스템간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자치행정영역과 (일본)자치행정영역의 공개시스템간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표 3-12〉 한국과 일본 사례분석 비교 및 시사점

		한국(지방행정부문)			일본(지방행정부문)		
공개영역		[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 + α			[급여인사]		
공개목적		[조직운영] 지자체 조직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인사운영] 자치단체별 공무원의 인사행정과 관련된 운영상황을 공개 [의정활동] X			지방공무원의 급여, 정원관리 상황을 국민, 주민에게 공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구성	지표 선정	비교지표	현황지표	X	비교지표 + 현황지표		
	공개 양식	지표중심	지표중심	X	보고서양식(비교+현황)		
운영	비교 집단	9유형	X	X	광역(1) 기초[지정시, 특례시, 일반시(16), 정(15), 촌]		
	관리 체계				생산/공개		
					수집/가공(1)	총무성 공개양식 제공	
					가공(2)/공개	자치단체 작성/공개*	
총괄 조직	X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행정과 담당자간 협업)			※ 중앙정부 수집, 가공 X 자치단체가 양식에 기입후 해당단체 및 총무성 홈페이지에 링크			
공개 장소	내고장알리미			총무성 홈페이지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개별법령(행안부장관 공개)			(일본)지방공무원법(자치단체 공개의무)			
이행확보	X			내각결의(총무성 비교공시)			

○ 첫째, 구성요소적 측면에서

- 먼저, 공개목적의 경우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수의 관련부서가 있는 만큼 목적 역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행안부의 공개시스템이 가지는 의미를 반영하여 공통된 목표 규정(예컨대, 주민과 자치단체의 상생적 발전 및 비교 등) 필요
- 다음, 공개항목과 공개양식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자치행정영역을 조직 운영과 인사운영으로 나누고, 각각 5개 지표, 15개 지표씩 총 20개 지표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자치행정영역을 인사/급여항목으로 통합하고, 이에 대하여 7개 영역 31개 항목에 대한 지표와 보고서 형태의 서술형 의견제시양식을 혼재하여 사용
- 우리나라의 공개지표 중심방식의 경우 주민의 이해가 쉽다는 장점과 개별 지표의 특이 수치에 대한 원인검토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일본의 자치단체 보고양식의 경우 지표와 의견제시가 혼재되어 문제에 대한 원인검토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교집단 전체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⁵⁾

○ 둘째, 운영요소적 측면에서

- 먼저, 비교집단은 우리의 경우 조직운영과 지방재정의 영역에서 비교집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각각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져 활용에 제한적. 반면 일본의 경우 앞서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인구규모와 산업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36유형(광역 1유형, 기초 34유형)으로 구분, 영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 ‘비교’를 통한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선정과 함께, 비교를 위한 집단의 적정화가 가장 중요한 바, 비교집단 세분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다음 총괄조직과 관리체계 측면에서 우리의 경우 총괄조직 부재로 자치

5)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은 제4장 제3절 공개양식 부분 참조.

행정영역을 하나의 목적으로 연계시키고, 이에 따라 동일한 공개지표의 선정기준과 공개양식을 갖기 어려운 실정

- 지방자치단체-행안부, 행안부내 복수의 부서간 협업 특성 등으로 인하여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문제 발생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관리체계상 정합성 검토 과정 포함 불가피한 상황임
- 마지막으로 공개장소는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만든 지방자치관련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인 ‘내고장알리미’에 포함시켜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총무성) 홈페이지내에 공개시스템 항목을 두고 공개.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과 별도 사이트의 활용은 비용을 포함한 효율성 관점과 이용자의 친근한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는 민주성 측면에서의 관점 차이 존재

○ 셋째, 법적근거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 (일본)지방공무원법에서 공개의 근거를 정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각의결정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서내 개별 지침 등에 근거 산재

- 때문에 우리의 경우 근거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의 내용이 부서 지침에 맡겨져 있어 근거의 안정성 측면이 취약한 상황이며, 특히 자치단체의 이행확보조치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문제가 상존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 필요

제4장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의 기본방향 :
공개목적의 설정
- 제2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 제4절 관련 검토사항

제1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공개목적 설정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은 앞서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내용을 체계화하여 제공한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법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자치정보의 제공을 규정
 -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목적은 (1)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객관적 지표를 통하여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를, (2)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치단체간 비교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의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음
 - 이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자율적 통제에 의한 자치권 강화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역할변화를 모색
- 때문에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구축은 크게 다음 두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 첫째, 비교측면에서 공개지표의 객관화와 유사단체의 적정화(세분화)가 담보되어야 하고,
 - 둘째, 운영측면에서 접근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제2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구성

1. 공개지표

(1) 공개지표의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의무주체로 되어있는 지방자치정보를 다시 행안부가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함
 -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개에 더하여 단순한 중복적 공개가 아니라 주민의 이해와 평가를 통하여 자치단체간 선의의 개선경쟁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모두가 공감가능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이러한 공개시스템이 가지는 의의에 기초하여 공개지표의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첫째,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목적부합성을 가져야 함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평가, 그리고 자치단체의 운영 책임성과 개선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 즉, 공개시스템의 지표는 ① 지역주민 평가지표(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한 지표), ② 자치단체 개선지표(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유사단체간 비교를 통하여 개선의지 도출이 가능한 지표)가 요구되며, 위의 지표중 ①과 ②, 최소한 ①의 목적성에 부합하여야 함
 - 둘째,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을 가져야 함

-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정보를 비교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만큼,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자료는 자치단체 활동중 만들어지는 지표 중 양적지표를 그 대상으로 함
- 즉, 공개시스템의 지표는 ③ 운영지표(투입요소 및 산출과정에서 생성된 지표)로서, ④ 양적지표(주관성이 가미된 질적지표 배제)에 초점

〈표 4-1〉 공개시스템 지표선정기준(안)

구분	지표구분	고려사항	비고
지방자치 목적부합성	① 지역주민 평가지표	주민의 관점에서 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 및 평가가 가능한가?	①, ②의 특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지표를 우선 선정하되, 주민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만 충족하는 경우도 일부 포함
	② 자치단체 개선지표	유사단체간 비교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개선의지 도출이 가능한가?	
객관적 비교가능성	③ 운영지표	자치단체의 투입, 운영 및 산출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가?	③, ④의 특성 모두 충족 필요
	④ 양적지표	계량화된 객관적 수치값의 추출이 가능한가?	

(2) 지방행정부문 운영지표

① 조직운영부문

- 조직운영부문의 공개지표는 공무원정원 등 5개 지표임

〈표 4-2〉 조직운영부문 공개지표

현행	2022년 추가검토 사항
공무원정원	(추가사항 없음)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현장공무원비율	
과장급 이상 상위직 비율	

② 인사운영부문

- 인사운영부문의 공개지표는 공무원현원 등 15개 지표이며, 현재 추가지표 검토중

〈표 4-3〉 인사운영부문 공개지표(해당부서 검토사항)

현행		2022년 추가 검토사항
직종별현원		직급별현원
시간선택제현원		계급별비율
임기제 현원		기술직이공계
여성공무원	+	총근무연수
연령		정년퇴직예정인원
장애인공무원		평균연가일수
여성관리자		맞춤형복지
신규임용		출산휴가 현황
휴직		
퇴직		
승진		
파견		
인사교류		
육아휴직		
징계(시도)		

③ 의정활동부문

- 의정활동부문은 현재 공개지표가 없으며, 현재 공개지표 검토중

〈표 4-4〉 의정활동부문 공개지표(해당부서 검토사항)

구분(30)	세부항목(90항목)
의회 회기운영(3)	본회의 연간 회의 기본일정
	상임위 기본 일정(000회기)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구분(30)	세부항목(90항목)
본회의 회의록(1)	일시, 장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발언내용
상임위원회 회의록(1)	일시, 장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발언내용
의정비 심의위원회(4)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주요내용
	월정수당 결정내용(금액)
	의정활동비 결정내용(금액)
행정사무감사(5)	감사일정
	자료요구목록 및 내용(위원회 공통사항)
	자료요구목록 및 내용(의원별 요구자료)
	감사 지적 및 시정·건의사항 목록
	감사기관별 회의록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2)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조치 미완사항의 처리계획
행정사무조사(4)	조사이유 및 조사할 사항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지방의회 질문답변 현황(3)	회기별 질문의원 명단
	질문의원별 질의내용
	질문의원별 질문에 대한 답변자 및 답변내용
의원별 검직 현황(4)	의원명
	검직기관명(회사, 법인)
	소재지
	직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5)	사용자 및 참석자 명단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금액
	사용장소

구분(30)	세부항목(90항목)
의안 처리현황(7)	의안번호 및 의안 명
	제안자 및 찬성의원
	제안일 및 상임위원회 회부일
	의안 내용
	의안 소관 상임위원회
	처리상태 및 처리일자
	처리회기
위원회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1)	조례안, 예·결산안, 청원, 건의안, 결의안 등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검토, 심사보고서
사무기구의 의원입법 지원현황(1)	의원 자치법규 입법지원 내용(사무기구)
사무기구의 예·결산분석 지원현황(1)	총괄 및 개별사업 분석결과 보고서(사무기구)
의회 민원처리 현황(1)	의회에 접수된 민원 및 탄원 등에 대한 내용 및 처리결과(사무기구)
정책분석 및 검토 현황(1)	의원요청 정책분석·검토보고 내용 및 결과(사무기구)
자매도시의회 및 국제회의 등 공식방문 현황(3)	방문일정
	방문 주요인사 및 취득자료
	귀국보고서
의원 및 위원회 국외비교시찰 현황(3)	연수일정
	방문 주요인사 및 취득자료
	의원 국외연수 보고서
자매도시의회 초청 및 비공식 대표단 등 의회방문접견 현황(3)	접견일정
	방문접견 도시 주요인사
	접견 내용 및 결과
의원 정책연구 현황(6)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
	연구결과 보고서
	연구기간 및 계약금액, 일자, 계약방식
	연구용역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활용결과

구분(30)	세부항목(90항목)
의원 역량강화 현황(3)	공공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교육기관, 기간, 비용
	민간위탁 역량강화교육 수행자 명단, 훈련기관, 기간, 비용
	위원회 워크숍 및 연찬 행사 개최시기, 장소, 참석자 명단, 개최결과
의회주최 행사개최 현황(3)	학술행사 개최 내용 및 결과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여론수렴행사 개최 내용 및 결과
	기념식 등 의전행사 내용 및 결과
위원회 및 의원주최 행사개최 현황(3)	학술행사 개최 내용 및 결과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여론수렴행사 개최 내용 및 결과
	기념식 등 의전행사 참석 내용
학술연구용역 현황(6)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및 계약금액, 일자, 계약방식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연구결과보고서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활용결과	
의회발간물 현황(2)	정기간행물 발행 제목 및 주요내용, 발행부수, 배포처
	비정기간행물 발행제목 및 주요내용, 발행부수, 배포처
의회자료체계 구축 현황(2)	책자자료 구축 내용
	비책자자료 구축내용
의원별 회의 출석율 현황(1)	본회의 및 소속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의원별 상벌현황(1)	상벌의 구체적 내용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현황(5)	의정보고회 개최 일자, 횟수, 보고서 내용 등
의원별 의원의무 실천 현황(5)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 청렴 의무실천,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지위남용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취득을 알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3) 향후 검토지표(예시)

① 조직운영

영역	검토(예시)	의미
조직운영	전체 팀단위중 과소팀 비율	최소조직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노정 (과소팀은 '1팀장 1직원 팀'을 의미)
참고지표	인구증감율	업무량 영향 요인(증가율 높을수록 복지 및 다양한 신규수요 증대)
	관할면적	업무량 영향 요인(면적 많을수록 관리적 측면의 수요 증대)
	유기한민원발급량	업무량 영향 요인(유기한 민원 발급량 많을수록 개발 수요 등 관련 업무량 증가)

② 인사운영

영역	검토(예시)	의미
인사운영	공무원 1인당 평균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많을수록 워라벨 수준 저하
	공무원 1인당 평균휴가잔여일수	평균잔여일수 많을수록 워라벨 수준 저하
	공무원 1인당 평균교육시간	평균교육시간 높을수록 단체장 또는 부서장의 직원 교육의지 높음 반영 (offline 교육)

③ 의정활동

영역	검토(예시)	의미
의정활동	지방의회 회의일수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지방의원의 의지 반영
	지방의원 의정비	평균보다 높을 경우 과다 책정, 낮을 경우 과소 책정
	지방의원 회의출석율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성실도 반영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원 역할에 대한 충실도 반영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적극성 반영

[참고] 지표발굴 검토과제

- 조직운영지표와 인력운영지표의 통합 구성 검토
 - 조직과 인력운영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조직에 연계하여 인력규모와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양자는 분리하여 논의되기 어려움
 - 예컨대 인력의 과다 과소 운영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원대비 현원 비율'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조직운영부문에 '정원'을 공개하고, 인사운영부문에 '현원'을 각각 제시하여 연계성과 지표의미를 상실
 - 일본의 경우도 자치행정영역의 정보공개는 조직(인력)부문과 인사부문이 연계되어 하나로 운영
 -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의 조직(부서)에 따른 지표구분이 아니라, 주민관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 구성이 검토되어야 함
- 구성 지표의 확대 및 변화 가능성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전면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하여 법적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념정의를 하였지만,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이라고 하여, 범위의 확대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바, 자치여건 및 상황변화에 따라 구성영역 및 지표의 변화 가능성 존재
 - 또한, 향후 지방자치 각 부문별 권한이양과 맞물려 공개지표가 변경될 가능성 역시 아울러 존재하는데, 참고로 우리와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자치행정 영역의 정보공개를 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완전한 자치조직권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인건비 차등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과 같은 지표는 없으며(일본의 경우도 자치조직권이 완전 이양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별 정원규모 규정), 예산대비 인력규모에 초점
 - 때문에 우리의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향후 자치조직권의 이양 정도, 인건비 지급방식의 변화 여부 등 조직운영부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지표 역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2. 공개양식

(1) 공개양식 유형

- 지방자치정보중 지방행정부문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지표중심 제시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이며,
 - 둘째, 자치단체 보고방식으로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임
- 이 두 가지 방식은,
 - 전자(지표중심 제시방법)의 경우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부문별 공개지표를 추출하고, 각 지표값을 중심으로 관련단체의 수치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하는 방식임
 - 후자(자치단체 보고방식)의 경우 중앙정부(일본 총무성)에서 자치단체 인력(인사)운영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공통의 양식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가 이 양식을 기입하여 총무성에 제출(링크)하는 방식임

(2) 대안비교

- 지방자치정보의 두 가지 공개양식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 ‘지표중심 제시방식’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개양식(공개지표)을 개발하고, 지표를 수집하여,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일련의 작업을 총괄
 - 지표를 중심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수치가 제시되어 가독성과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 자치단체별 특수한 사정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치만 제공되어 판단이나 평가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짐
 - ‘자치단체 보고방식’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개양식(공통양식)을 개발하는 것은 같지만, 이후 과정은 자치단체가 이 양식에 기입하여 총무성 홈페이지에 제시(링크)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연계적으로 작동
 - 하나의 자치단체가 가지는 지방행정부문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 보고양식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 실제 주민이 이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정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치단체 간 비교 역시 보고양식내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단점 존재

〈표 4-5〉 공개양식 대안간 비교

구분	지표중심 제시방식	자치단체 보고방식
양식특성	• 지표	• 지표+설명(이유, 원인)
관련주체	• 개발/수집/게시 : 중앙정부	• 개발 : 중앙정부 • 기입/게시 : 자치단체
장 단 점	장점	• 1 자치단체의 전체적 특성 파악 가능 • 지표의 특이 수치에 대한 설명 부가
	단점	• 보고서 형식 복잡 : 주민이해 어려움
운영국가	• 한국(행정안전부)	• 일본(총무성)

- 이상의 공개지표와 공개양식을 토대로 비교집단 세분화 유형⁶⁾을 적용할 경우 공개양식을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6) 지방자치단체 세분화 유형은 다음 제3절 3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기안(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설치기준)에 의함.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인구변수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보다 현실반영적이며 논리성을 갖춘 유형화 작업이 요구됨.

〈표 4-6〉 공개양식(예) : 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기구설치기준으로 세분화할 경우(조직운영 : 공무원1인당 주민수 비교)

[현행방식]

연번	구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평균(단위: 명)	
1	특광역시	371	
2	도	390	
3	50만 이상시	297	
4	50만 미만 일반시	207	
5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136	
6	5만 이상 군	100	
7	5만 미만 군	54	
8	특별시 자치구	265	
9	광역시 자치구	299	

구분	특별광역시	도	인구50만 이상시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5만 이상군	5만 미만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최대 지자체명	517 서울 [본청]	909 경기 [본청]	367 경기 고양시	355 경기 의정부시	232 경북 구미시	270 대구 달성군	78 충북 증평군	396 서울 송파구	457 대구 달서구
최소 지자체명	155 세종 [본청]	109 제주 [본청]	207 경남 창원시	68 강원 태백시	71 강원 삼척시	57 경북 의성군	23 경북 울릉군	101 서울 중구	83 부산 중구
평균	371	390	297	207	136	100	54	265	299

(‘50만 미만 일반시’ 클릭)

연번	시도	기관구분	기관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9개유형	기구설치기준		
1	경기	시	4	4-1	파주시	283
2	경기	시	4	4-1	의정부시	355
3	경기	시	4	4-1	김포시	353
4	경기	시	4	4-1	광주시	301
5	경기	시	4	4-1	광명시	251
6	경기	시	4	4-2	군포시	288
7	경기	시	4	4-2	하남시	317
8	경기	시	4	4-2	오산시	300
9	경기	시	4	4-2	양주시	212
10	경기	시	4	4-2	이천시	191
11	경기	시	4	4-2	구리시	251
12	경기	시	4	4-3	안성시	185
13	경기	시	4	4-3	포천시	150
14	경기	시	4	4-3	의왕시	234
15	경기	시	4	4-4	여주시	116
16	경기	시	4	4-4	동두천시	142
17	경기	시	4	4-5	과천시	116
18	강원	시	4	4-4	동해시	136
19	강원	시	4	4-5	태백시	68
20	강원	시	4	4-5	속초시	122
21	충남	시	4	4-4	논산시	107
22	충남	시	4	4-5	계룡시	107
23	충남	시	4	4-3	당진시	145
24	전남	시	4	4-2	목포시	173
25	경남	시	4	4-1	양산시	262
평균						207



[수정방식(예시)] '50만 미만 일반시'

[일반시 4-1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의정부시	355	- 유사집단내 최대(예)
경기	김포시	353	
경기	광주시	301	
경기	파주시	283	
경기	광명시	251	- 유사집단내 최소(예)
경남	양산시	262	
유사단체 평균		301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 해당 수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1~2줄로 요약 기술]

[일반시 4-2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하남시	317	
경기	오산시	300	
경기	군포시	288	
경기	구리시	251	
경기	양주시	212	
경기	이천시	191	
전남	목포시	173	
유사단체 평균		247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3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의왕시	234	※ 보충 의견(예)
경기	안성시	185	
경기	포천시	150	
충남	당진시	145	
유사단체 평균		179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4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동두천시	142	
경기	여주시	116	
강원	동해시	136	
충남	논산시	107	
유사단체 평균		125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일반시 4-5유형]

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고
경기	과천시	116	
강원	속초시	122	
강원	태백시	68	※ 보충 의견(예)
충남	계룡시	107	
유사단체 평균		103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207	
	시 전체	000	
	기초단체 전체	000	

〈표 4-7〉 공개양식(예) : 자치단체 유형화 기준을 기구설치기준으로 세분화할 경우
(인사운영 : 장애인공무원수 및 비율)

[현행방식]

자치체명	의무대상고용인원(단위:명)	장애인공무원(단위:명)	비율(단위:%)
서울	42,589	2,382	5.6
부산	15,724	845	5.4
대구	10,554	457	4.3
인천	13,175	493	3.7
광주	7,137	322	4.5
대전	6,467	274	4.2
울산	5,415	232	4.3
세종	1,714	65	3.8
경기	49,444	1,866	3.8
강원	15,631	575	3.7
충북	12,744	454	3.6
충남	16,060	572	3.6
전북	15,042	567	3.8
전남	19,702	684	3.5
경북	23,425	821	3.5
경남	21,402	766	3.6
제주	4,726	339	7.2
총계	280,951	11,714	4.2

구분	특별·광역시	도
최대	2,382	1,866
자치체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최소	65	339
자치체명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평균	634	738

(‘시/도(예: 충북)’ 클릭)

구분	자치체명	의무대상고용인원 (단위:명)	장애인공무원 (단위:명)	비율 (단위:%)
2020	충청북도	1,733	67	0.03866
2020	청주시	3,103	105	0.03384
2020	충주시	1,425	45	0.03158
2020	제천시	1,076	43	0.03996
2020	보은군	660	25	0.03788
2020	옥천군	698	26	0.03725
2020	영동군	683	25	0.0366
2020	증평군	453	11	0.02428
2020	진천군	741	28	0.03779
2020	괴산군	698	26	0.03725
2020	음성군	873	24	0.02749
2020	단양군	601	29	0.04825



[수정방식]

[참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3.4%)

[일반시 4-1유형] (단위 : 명)

자치단체	의무대상 고용인원	장애인공무원	비율	비고	
경기 김포시	1270	48	3.780		
경기 의정부시	1266	47	3.712		
경기 파주시	1587	57	3.592		
경기 광명시	1042	37	3.551		
경기 광주시	1231	41	3.331		
경남 양산시	1223	46	3.761		
유사단체 평균	1,270	46	3.621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910	35	3.930	
	시 전체	000	000	0.000	
	기초단체 전체	000	000	0.000	

※ 해당 수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1~2줄로 약술

[일반시 4-2유형]

자치단체				비고	
경기 오산시	722	41	5.679		
경기 양주시	917	51	5.562		
경기 군포시	882	34	3.855		
경기 하남시	882	31	3.515		
경기 구리시	758	25	3.298		
경기 이천시	1087	32	2.944	※ 장애인 고용부진 원인(예)	
전남 목포시	1260	46	3.651		
유사단체 평균	930	37	4.072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910	35	3.930	
	시	000	000	0.000	
	기초단체 전체	000	000	0.000	

[일반시 4-3유형]

자치단체				비고	
경기 의왕시	667	28	4.198		
경기 포천시	902	34	3.769		
경기 안성시	1001	36	3.596		
충남 당진시	679	36	3.554		
유사단체 평균	812	34	3.779		
평균	일반시(4유형)	910	35	3.930	
	시 전체	000	00	0.000	
	기초단체 전체	000	00	0.000	

[일반시 4-4유형]

자치단체					비고
경기	동두천시	627	22	3.509	
경기	여주시	930	33	3.548	
강원	동해시	646	24	3.715	
충남	논산시	1066	39	3.659	
유사단체 평균		817	30	3.607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910	35	3.930	
	시 전체	000	00	0.000	
	기초단체 전체	000	00	0.000	

[일반시 4-5유형]

자치단체					비고
경기	과천시	503	18	3.579	
강원	속초시	649	26	4.006	
강원	태백시	590	37	6.271	※ 장애인고용 확대 배경(예)
충남	계룡시	357	14	3.922	
유사단체 평균		525	24	4.444	
참고 평균	일반시(4유형)	000	00	3.930	
	시 전체	000	00	0.000	
	기초단체 전체	000	00	0.000	

제3절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1. 비교집단

- 지방자치정보의 공개가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통한 개선의지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치단체별 현황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갖는다면 비교단체를 위한 유사단체 세분화의 필요성은 없음
 - 그러나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이 해당 지역주민의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하여 자치단체 활동을 통제하고,
 - 자치단체의 경우 책임성의 제고와 함께 보다 더 개선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는데 공개시스템의 목적을 둔다면, 비교집단(유사단체)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직운영의 경우 총 9개의 유형을 비교집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사운영의 경우 비교집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이 9개 유형(아래 표에서 음영처리 부분)의 경우 기초단체중 시의 경우 3개의 유형으로, 군의 경우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개별 자치단체의 위치를 보고 있으나, 하나의 유형내 범위가 매우 커서 비교(유사)단체로서의 그룹핑이 의미를 가지기에는 한계를 노정
 - 시의 경우 ① 50만 이상 시, ② 50만 미만 일반시, ③ 50만 미만 도농복합시
 - 군의 경우 ① 5만 이상 군, ② 5만 미만 군
 - 예컨대 '50만 미만의 일반시'의 경우 대상 자치단체가 10만 미만의 소규모 시에서부터 50만 정도까지의 시를 포함하고 있어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음
 - 앞서 제1절에서 공개양식 수정표(예시)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50만 이

상 일반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평균을 보면, 현재 유형양식에서는 평균값이 최대인 자치단체(356명)과 최소인 자치단체(68명)간 편차가 288명으로 매우 크고, 이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인 주민평가나 자치단체의 개선의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표 4-8〉 조직운영부문의 비교집단 유형

구분	가구설치기준					
	1	2	3	4	5	6
1 (특별*광역시)	서울특별시	350~400만 300~350만	250~300만	200~250만	200만 미만	세종시
2 (도)	경기도	300~400만	200~300만	100~200만	제주도	
3 (인구50만 이상시)	120만 이상	100~120만	90~100만	70~90만	50~70만	50만이상 (구 설치X)
4 (인구50만 미만 일반시)	30~50만	20~30만	15~20만	10~15만	10만 미만	
5 (인구50만 미만 도농복합시)	30~50만	20~30만	15~20만	10~15만	10만 미만	
6 (5만 이상 군)	20만 이상	15~20만	10~15만	5~10만		
7 (5만 미만 군)	3~5만	3만 미만				
8 (특별시 자치구)	특별시 자치구					
9 (광역시 자치구)	50만 이상	30만~50만	10~30만	10만 미만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시의 경우 19개의 유형을, 우리의 군과 대비할 수 있는 町の 경우 1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비교을 실익을 높이고 있는 실정(일본의 경우 유형구분에 '인구'와 '산업구조' 반영)

- 시의 경우 ① 정령지정시, ② 중핵시, ③ 특례시, ④ 일반시(16개 유형)
- 정의 경우 15개 유형

○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비교의 실익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비교(유사)집단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 필요하지만, 비교집단의 유형화 작업이 인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을 통한 논리적 구조의

설정과 비교유형내 적정수의 자치단체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되는 만큼,

- 단기적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확보가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설치 기준에 의한 유형(위 표의 우측 기구설치기준 부분)을 보완하여 비교의 실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의 유형화의 유형생성 기준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고, 무엇보다 행정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유형화 통합운영은 불가능하며,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민관점에서 재구성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분화를 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연구의 자료와 연계하여 지방자치정보 비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단체 유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중장기적 자치단체 유형화 모델은 자치행정영역과 지방재정영역 공통 적용 목표)

〈표 4-9〉 유사(비교)집단 대안간 비교

구분		단기안 [조직기구설치기준 원용]	중장기안 [신규 유사단체 유형구분 개발]
특징		- 현재 조직기구 설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 유형구분 보완 활용	- ‘인구’ 기준으로만 유형구분이 되어 조직기구 설치기준을 전면 개편 - ‘인구’이외 유형화 반영 기준 개발(* 일본의 경우 인구와 산업구조로 유형 세분화)
장 단점	장점	- 신속 적용가능(기 설치 기준 활용) - 자치단체 수용성 용이	- 자치단체 특성 반영 용이 - 중앙정부의 지자체 정책에 통일적 활용(유사단체 세분화 모형)
	단점	- 자치단체 특성 반영 한계	- 모형개발 시간 소요
비고		- 단기적으로는 조직부문에서 기구설치시 활용하고 있는 ‘조직기구 설치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하되, - 중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유사단체 구분모형을 개발, 적용 필요	

- 참고로 중장기적으로 유형 세분화 작업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유형화 방식을 비교해 보면,
- 각각 비유형화 단체를 제외하고 우리(기구설치기준)의 경우 인구규모로 1차 유형화를 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인구규모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 일본의 경우 인구규모와 산업구조특성(산업별 취업인구 구성비)를 교차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유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아래 표 참조)
 - 우리의 경우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연구와 연계하여 유형화모델 개발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현재 지방행정부문과 지방재정부문에서 달리 유형화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일본과 같이 통일된 유형화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표 4-10〉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기준 비교

한국	인구규모
조직운영	인구규모 × 인구규모
지방재정	인구규모 × 재정여건

주 : 조직운영은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자치단체간 재정상황 평가목적 활용

일본	산업구조특성(산업별취업인구구성비)
공통사용	인구규모 × 산업구조특성

주 : 비유형화단체 : 도도부현, 지정시, 중핵시, 특례시, 특별구, 촌 각각 1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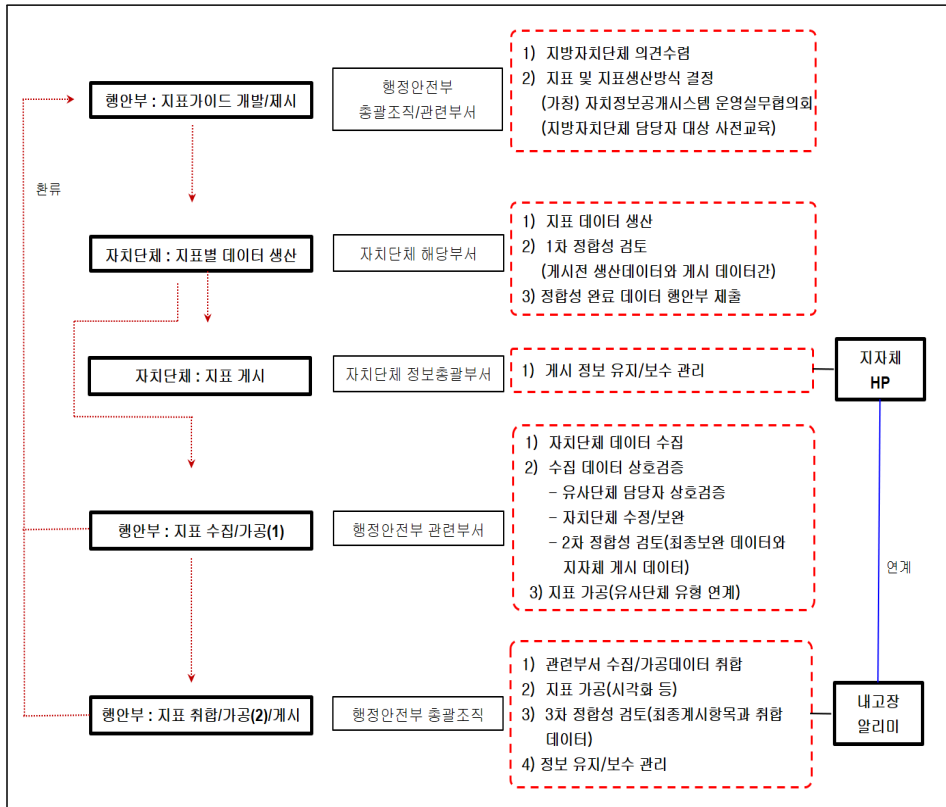
- 중장기안의 자치단체 유형화 세분시 우선적으로 고려가능한 검토변수로 인구규모(기본 특성), 산업구조(도시 산업구조 특성), 인구증감(도시 활성화 특성) 등 우선 검토 가능

2. 관리체계(정보데이터 정합성 관리)

- 공개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의 기본은 데이터의 정확성에 기초함
 - 운영목적과 운영시스템이 지역주민의 이해와 평가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주민 편의적으로 완비되어도, 데이터의 부정확성이 나타날 경우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과 정당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현재 지방자치관련 정보를 게시하기까지 데이터의 생산, 취합/편집, 게시하는 각 단계의 작업주체가 상이하고, 이외 자치단체 담당자의 인사에 따른 교체, 데이터의 수집시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 따라서 데이터관리체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데이터의 정합성에 더하여 각 단계별 운영주체의 책임과 협업을 포괄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로 총칭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우 단일의 조직체계내 정보공개관리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또 행정안전부내에서도 다수의 부서가 관여하는 만큼, 정보데이터의 정합성과 이에 대한 참여자의 역할(책임)이 특히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 다음 데이터관리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치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은 자치단체 단위에서의 1차 데이터 생산과정과 게시(지자체 홈페이지)과정을 거치며, 이후 행정안전부 공개시스템 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가공단계, 그리고 게시(내고장알리미)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 3차례의 정합성 검토과정이 필요
 - 첫 번째는 자치단체가 생산데이터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 생산데이터와 게시데이터간 정합성을 확인하는 검토이고,
 -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와 자치단체 게시데이터간, 관련부서에서의 가공데이터와 총괄조직에 의한 게시데이터간 데이터 정합성 검토가 그것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과정전 데이터 수치에 대한 유사단체간 상호검증을

선행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조치

〈그림 4-1〉 데이터관리체계 흐름도



3. 총괄조직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데이터관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수행부서 역할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조직 필요
 - 현재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우 행정안전부 해당 부서(자치분권제

도과, 지방인사제도과, 지방의회선거과)에서 각각 공개지표를 추출한 뒤,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

- 기존 2개 부서의 경우 각각의 지표추출 방식에 의하여, 각가 상이한 가 공단계를 거쳐 정정보(비교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경우 하나의 일관된 틀(지표선정 및 관리, 게시 등) 속에서 개별 관련부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바, 공통된 목적하에 공통된 지침을 제공하고, 공통의 양식을 통하여 게시/관리를 책임주도할 수 있는 총괄조직 필요

○ 총괄 조직의 설치는 두 가지 방식의 검토가 가능한데,

-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개시스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내에 총괄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과,
- 둘째, 중장기적으로 데이터관리체계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의 총괄 조직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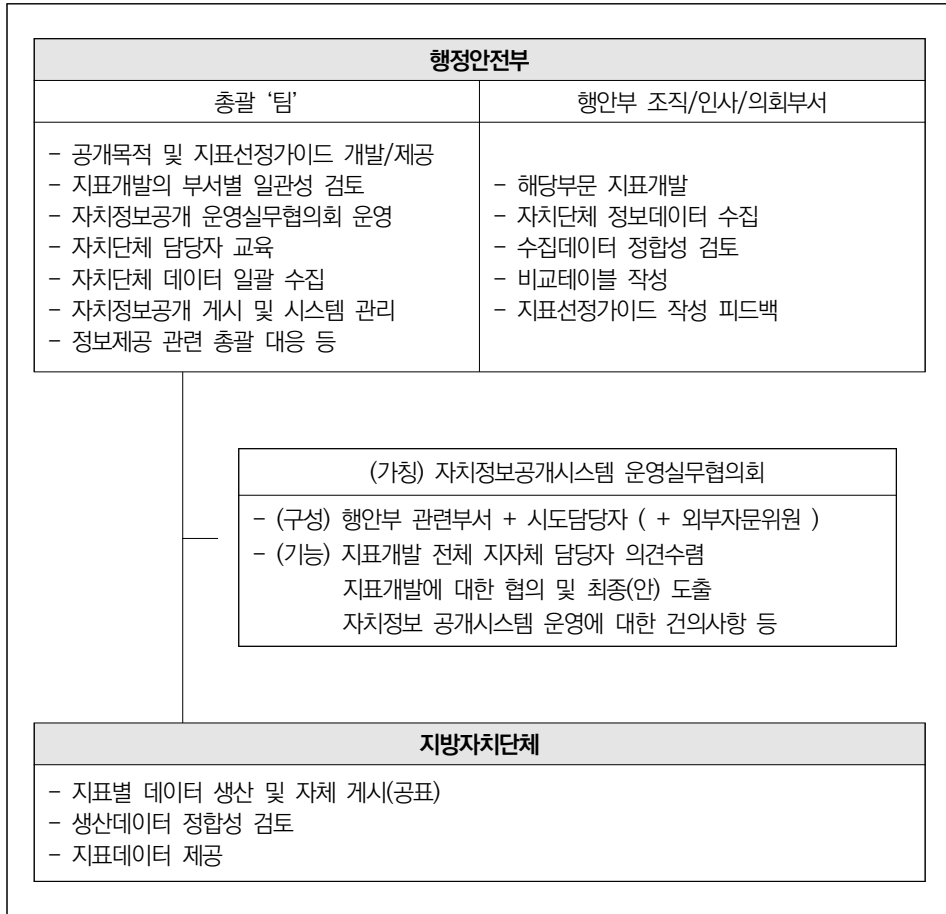
○ 첫째, 행정안전부내 총괄 조직의 설치는 현 단계에서는 최소한 '팀'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향후 역할 및 기능정도를 반영하여 가감

- 기능

- 공개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 공개항목의 결정(행정안전부내 조직/인사/의회관련 부서 협업,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
- 자치정보공개시스템 운영실무협의회 운영
-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관리
- 자치단체 데이터 일괄수집
- 정보제공 관련 총괄대응 등

- 총괄 '팀'과 기존 해당부서, 자치단체간 역할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4-2〉 총괄 ‘팀’ 및 관련부서,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관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 민관위원회의 설치 검토 필요

- 첫째,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운영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개정보의 추출 및 결정과정에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 둘째,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책임성에 대한 주민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의 공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신뢰적 관계속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의 공동참여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공개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정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근거 마련
 - 기능 : 공개항목의 결정,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편, 기타사항
 - 구성 : 행정안전부 및 단체장협의회 추천 적정수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이를 지원할 실무협의회(행안부 관련부서 및 지자체 담당자)

〈표 4-11〉 운영주체 대안간 비교

구분		단기안 [행안부내 ‘팀’단위 총괄 조직]	중장기안 [(가칭)자치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위원회]
특징		- 행안부내 ‘팀’ 단위 총괄 조직 설치 -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한 (가칭)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무협의회 구성	- 행안부/지방자치단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형태 - 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실무협의회로 구성
장 단점	장점	- 의사결정과정 신속성 - 설치 간단	- 공개시스템 추진의 정당성 확보 용이 - 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제고
	단점	- 수평적 관계에서 협력부서 총괄 애로 - 자치단체 이해관계 발생시 조정력 발휘 곤란	- 구성 및 의사결정과정 상당 시간 소요
비고		- 제도 운영초기에는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장점으로 하는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지방간 안정적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공개시스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자치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위원회 활용 모색	

4. 공개장소

- 정보공개 장소(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
 - 첫째, 중앙정부의 홈페이지에서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과,
 - 둘째,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식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 공개정보만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운영하는 방식
 - 지방자치관련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에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는 방식
- 먼저, '중앙정부 홈페이지'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별도 사이트' 방식의 경우 각각 효율성과 민주성의 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
 - '중앙정부 홈페이지' 방식의 경우 별도의 사이트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적 측면의 절감을 통하여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고, 중앙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앙정부 공무원의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정부 주도의 집권적·관리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주도의 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이라는 논란 제기 가능
 -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 방식의 경우 사이트 구축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지적되지만, 주민이나 기타 관련된 이용자가 보다 친근하게 접근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주민중심으로 평가 가능
- 다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별도 사이트' 방식의 경우 '공개정보만을 위한 독자사이트 운영방식'과 '지방자치관련 종합정보제공 사이트에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는 지방재정정보에 대하여, 그리고 후자의 경우 지방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성격과 정보량에 기인
 - 지방행정부문의 경우 정보의 데이터량이 많지않아 독자의 사이트 운영은 실익이 낮으며, 현재 여건상 비용적 측면과 주민친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 단기적으로는 현 시스템(내고장알리미)을 보완하여 운영
- 다만 중장기적으로 효율성 측면과 민주성 측면에 대한 상대적 검토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내에 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음

〈표 4-12〉 공개장소 대안간 비교

구분		1안 (중앙정부 홈페이지)	2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별도 사이트)
특징		- 중앙정부 홈페이지내 시스템 게시 (※ 일본 총무성)	-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별도 사이트 게시 (※ 우리나라) - 2-1안 : 독자 사이트(지방재정365) 2-2안 :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내 포함 (내고장알리미)
장 단 점	장점	- 비용절감(사이트 개설 비용 없음)	- 지역주민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중앙정부 지원적 역할 이미지
	단점	- 중앙집권적 이미지	- 사이트 개발 및 관리비용 소요 - 이용자수 적을 경우 실효성 논란
비고		- 1안과 2안의 경우 각각 효율성과 민주성 관점에서 상대적 우위 존재.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의 이해와 평가를 우선 강조하는 만큼, 보다 주민중심적인 2안 적용 - 2-1안과 2-2안의 경우 정보성격과 정보량(데이터규모)에 따라 차별적 적용. 지방 행정부문의 경우 정보량의 규모를 고려할 때, 독자사이트 운영 불가. 단기적으로는 2-2안 우선 적용	

제4절 관련 검토사항

1. 이행확보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는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행확보를 어떻게 높이는가의 문제임
 -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이행관련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 관련 법령 미개정시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음

(1) 직접적 이행확보방안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이행 규정

- 목적
 -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 절차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행확보와 관련된 문제점 사전 배제
- 방법
 -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 공시에 대한 이행확보와 마찬가지로 관련 절차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기
 - 시행령 반영(예)

〈표 4-13〉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절차 법령반영(예)

지방자치법시행령 ○○조

-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지방자치정보에는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개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정보 공개항목중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개항목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

7) 지방재정법 관련법령은 제3장의 내용 참조.

- 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00조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00조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간 정보공개 협업관계에 대한 논란 소지 불식
- 법령에의 의무 명시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확보 가능

(2) 간접적 이행확보방안(1) : 정기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 실태조사’ 및 ‘언론공표’

○ 목적

- 행정안전부 차원의 정례적인 ‘지방자치정보 공개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언론공표’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홍보효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 유도

○ 방법(1) : 자치정보 공개실태조사

- 시기 : 매년 1월(전년도 12.31 기준)
- 주관 : 행정안전부
- 대상 : 전체 지방자치단체
- 조사내용 : 공개항목/작성방법/공개시기/공개장소/행정안전부 공개시스템과의 연동 등

○ 방법(2) : 언론공표

-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정보 공개현황’으로 언론 발표

- ‘미공개’ 및 ‘연계 등 추진활동 미흡’ 단체를 명시하여 적극적 참여 의지 필요성 홍보
- 자율적 통제의 자치활동을 위한 주민의 자치정보 활용 강조

○ 기대효과

- 시행령 등 법령 미개정시 검토가능 방법
- 실태조사 결과의 언론공표를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 촉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개 유도효과 기대

(3) 간접적 이행확보방안(2) :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평가시 반영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게시와 중앙정부 연계를 정부정책평가에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이행 확대 모색

○ 방법

- 합동평가의 평가지표로 포함
- 평가영역 : 현재 합동평가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부문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영역의 구성지표중 하나로 포함
- 평가지표 : 시/도 및 해당 시/군/구의 공개항목, 작성방법, 공개시기, 공개장소, 행정안전부 공개시스템과의 연동 등에 대한 종합점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 기대효과

- 시행령 등 법령 미개정시 검토가능 방법
- 합동평가 결과공시를 통하여 해당 해당 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유도효과 기대

(4) 간접적 이행확보방안(3) : 관련 학회-지방4단체 공동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무처리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은 주민의 알권리를 넘어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식변화에 영향

○ 방법

- 지방자치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과 지방4단체간 공동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 대상 : 단체장, 지방의원

- 장소 : 권역별 개최를 통하여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홍보효과 최대화 (관련 전문가, 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패널참여를 통하여 자치단체내 확산 모색)

- 세미나 결과자료 미참석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송부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이행확보를 위한 직접적 기대효과는 한계
-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홍보 효과 확보 가능

2. 주민홍보

-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의 1차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비교적 관점에서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 정보공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방법과 주민교육에 의한 방법이 상정 가능함

- 첫째, 주민에 대한 직접적 홍보방법은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에 대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렛 등을 제작,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
 - 홍보내용 : 공개시스템 운영목적(주민에 의한 자치단체 책임성 감시 필요), 공개지표, 효과 등
 - 게시장소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아파트단지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 게시공간 등(지방자치단체 협업)
- 둘째, 지방자치 교육기관, 교육단체에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 관련사항을 교육자료로 만들어 제공
 -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역교육청(초중등학교 사회교육 참고자료 지원), 대학(행정관련 학과 참고자료 제공) 등과의 연계협력
 - 시민단체 주관의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에 참고자료 제공 등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정보의 공개 및 시스템 구축·운영(제26조)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재천명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책임성 확보방법(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과 중앙정부의 역할(행안부의 주민자율통제 지원기능)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 보유
 - 이에 따라 새로이 운영될 지방자치정보 공개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면서,
 - 중장기적으로는 공개시스템의 구성항목과 운영 전 부문에 걸쳐, 행정중심의 정보공개 관점이 아니라, 주민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주민입장에서 알기 쉬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변경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정보공개시스템의 항목구성과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 먼저, 공개항목 측면에서 공개항목(지표)의 선정기준을 목적부합성(지역 주민 평가지표, 자치단체 개선지표)과 비교가능성(양적지표, 운영지표)에 초점을 두고 제시하였으며, 공개양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표중심 제시방식'과 일본의 '자치단체 보고방식'을 비교검토한 뒤, 주민의 이해와 평가에 상대적으로 용이성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지표중심 적용방식'의 우선 적용을 제안
 - 다음, 시스템 구축과 운영측면에서는 데이터관리체계의 마련과 데이터정합성에 대한 관리, 운영주체로서 앞서 제시한 데이터관리체계를 총괄할 팀단위 조직의 설치, 비교를 위한 자치단체 유형구분의 세분화 방안, 주민편의와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개장소(사이트) 선정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각각의 정책적 제안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5-1〉 공개시스템 구성 및 운영 종합

구분		세부방안
공개목적의 설정		① 지역주민의 이해와 평가에 도움 제공 ② 자치단체의 자발적 개선의지 유도
공개시스템 구성	공개지표	[지표선정 기준] ① 목적부합성 : 위 목적 1, 2 반영 지표 ② 비교객관성 : 중앙정부의 공개목적상 주관적 평가에 의한 논란 배제, 양적 지표 한정 [지표(예시)]
	공개양식	① 비교지표형식(주민이해 및 평가 상대적 용이) ② 보고자료형식
공개시스템 운영	관리체계	○ 정보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하여 3단계 정합성 검토 단계 설정
	추진조직	① 단기간 : 행안부내 팀단위 총괄조직 ② 중장기간 : (가칭) 자치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위 설치 * 행안부-자치단체-전문가 참여
	비교집단	① 단기간 : 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기준 보완 활용 ② 중장기간 : 유사단체 세분화모형개발 적용 * 일본 유형화 참조(별도 연구 필요)
	공개장소	① 중앙정부 관리사이트(우리나라) ①-1 : 독자사이트(지방재정365) ①-2 : 종합사이트 포함(내고장알리미) : 정보량 대비 독자사이트 운영의 과비용 초래, 주민친화적 접근성 고려 ② 중앙정부 홈페이지(일본 총무성)
지방자치단체 이행확보조치	법적 조치	○ 공개절차 자치법시행령 규정(지방재정법 원용)
	행정적 조치	① 정보공개이행 실태조사 및 언론공표 ② 정보합동평가 평가지표 포함 ③ 관련 학회-지방4단체협의회 세미나(토론회) 인식 확대

- 본 연구의 경우 앞서 연구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정보 공개영역중 자치행정영역(조직운영, 인사운영, 의정활동)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확대가 필요
 - 첫째, 지방자치정보의 공개범위를 현행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처리 투명성 측면에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공개시스템 제도의 정착화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공개범위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본 연구보고서는 자치행정영역의 체계적 운영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행정부문에 범위를 한정하였지만, 장래적으로 자치행정영역의 정보공개와 지방재정영역의 2원적 공개를 통합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허영(2011), 한국헌법론, 박영사
- 內閣部(2005), 經濟財政運営と構造改革に関する基本方針
- Deloitte for the Shakespeare Review of Public Sector Information(2013),
 “Market Assessment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Deloitte, May 2013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일본)지방공무원법
- <https://www.laiis.go.kr>
- <https://lofin.mois.go.kr>
- <https://www.soumu.go.jp>
- <https://www.gov.uk>
- <https://data.gov.uk>
- <https://opendata.camden.gov.uk>
- <https://www.cambridge.gov.uk>

[별첨 1] 일본 총무성 :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부문 정보공개 공통양식

○○ (도도부현, 시구정촌)의 급여·정원관리 등에 대하여

1. 총괄

(1) 인건비 상황(보통회계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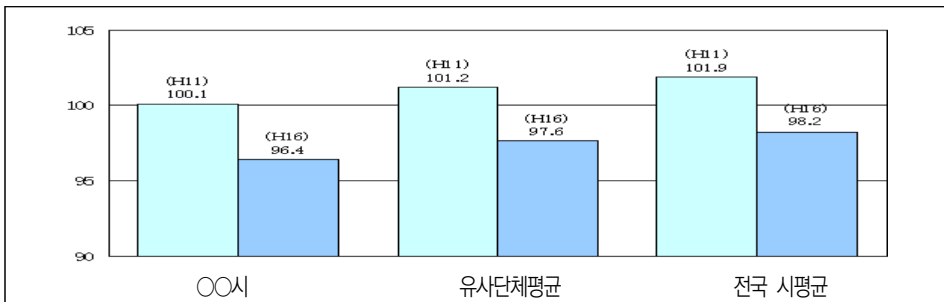
구분	주민기본대장 인구 (○년 1월 1일)	세출액 A	실질수지	인건비 B	인건비율 B/A	(참고) ○년도의 인건비율
○년도	인	천엔	천엔	천엔	%	%

(2) 직원급여비 상황 (보통회계결산)

구분	직원수 A	급여비				(참고) 1인당급여비 B/A	(참고) 유사단체평균 일인당급여비
		급료	직원수당	기말·근면 수당	B계		
○년도	인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 주 1. 직원수당에 퇴직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직원수는 ○년 4월 1일 현재의 인수이다.
 3. 급여비에 대해서는 임기부단시간근무직원(재임용직원(단시간근무))의 급여비가 포함되며, 직원 수에는 당해직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3) 라스파이레스지수 상황



- 주 1. 라스파이레스지수란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직 급료 월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원수(구성)를 이용하여, 학력이나 경험연수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고, 국가의 행정직 봉급표(1) 적용직원의 봉급월액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이다.
2. ()의 수치는 지역수당 보정후의 라스파이레스지수를 가리킨다. 지역수당 보정 후 라스파이레스 지수란 지역수당을 가미한 지역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급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지역수당 지급률을 이용해 보정한 라스파이레스지수 [보정전 라스파이레스 지수×(1+해당 단체의 지역수당 지급률)/(1+국가 지정 기준에 의거한 지역수당 지급률)에 따라 산출]

※ ○년 4월 1일의 라스파이레스지수가 [1] 3년 전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2] 3년 연속 상승한 경우, [3]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 및 개선 전망

--

(4) 급여개정상황

1) 월례급

구분	인사위원회 권고				급여개정률	(참고) 국가 개정률
	민간급여(A)	공무원급여(B)	A - B	권고(개정률)		
○년도	엔	엔	엔 (%)	%	%	%

주 : '민간급여', '공무원급여'는 인사위원회 권고에서 공공/민간의 4월분 급여액을 라스파이레스 비교한 평균급여월액이다.

2) 특별급(기말·근면수당)

구분	인사위원회 권고				연간 지급월수	(참고) 국가의 연간 지급월수
	민간 지급비율(A)	공무원 지급월수(B)	A - B	권고(개정월수)		
○년도	월	월	월	월	월	월

주 : '민간 지급비율'은 민간사업소에서 지불된 상여 등의 특별급 연간지급비율, '공무원 지급월수'는 기말수당 및 근면수당의 연간지급월수이다.

(5) 급여제도의 종합적 재검토 실시 상황

[개요] 국가의 급여제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에서는 봉급표 수준의 평균 2% 인하 및 지역수당 지급비율 재검토 등에 힘쓰기로 되어 있다.

1) 급료표 재검토

[실시/미실시]

실시내용[평균인하율, 실시(실시예정) 시기, 경과조치유무 등 구체적인 내용(미실시 시에는 그 이유)]

(급료표의 개정 실시시기)
 [기입예] 2015년 4월 1일
 [기입예] 일반행정직의 급료표에 대해서 국가의 재검토 내용을 근거로 평균○% 인하. 젊은 층에 대해서는...고령층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의 완화를 위해 3년간(2018년 3월 31일까지) 경과조치(현급보장) 실시. 다른 급료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직 급료표와의 균형을 바탕으로 재검토 실시.

2) 지역수당 재검토

실시내용(국가기준의 경우 지급비율 및 해당 단체의 지급비율)

(지급비율) 【기입(예)】 국가기준 ●%에 대비하여, △△현에서도 ●%를 지급
 (실시시기) 【기입(예)】 0000년 4월 1일부터 실시. 단계적으로 지급비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0001년 개정시점에서는 1%, 0000년 2%, 0000년부터는 3%를 지급
 (참고)

	0000년 지급비율	0001년(당해연도) 지급비율		0002년 지급비율	0003년 지급비율	0004년 지급비율	0005년 지급비율	0006년 지급비율
		4월1일시점	소급개정후					
국가기준에 의한 지급비율	0%	1%	2%	3%	3%	3%	3%	3%
△△시의 지급비율	0%	1%	2%	3%	3%	3%	3%	3%

3) 기타 재검토 내용

[기입예] 관리직원 특근수당 및 단신부임수당에 대해 국가와 동일하게 재검토 실시. (2015년 4월 1일 실시)

(6) 특기사항

2. 직원의 평균급여월액 및 초임급 등

(1) 직원의 평균연령, 평균급료월액 및 평균급여월액(○년 4월 1일기준)

1) 일반행정직

구분	평균연령	평균급료월액	평균급여월액	평균급여월액 (국가비교베이스)
○○시	세	엔	엔	엔
○○현	세	엔	엔	엔
국가	세	엔	-	엔
유사단체	세	엔	엔	엔

2) 기능노무직

구분	공무원				민간			참고 A/B
	평균 연령	직원 수	평균급료 월액	평균급여 월액(A) (국가비교베이스)	대응민간 유사직종	평균 연령	평균급여 월액(B)	
○○시								
○○○								
○○○								
○○○								
○○현								
국가								
유사단체								

구분	참고		
	연수입베이스(시산치) 비교		
	공무원(C)	민간(D)	C/D
○○시			
○○○			
○○○			
○○○			

※ 민간데이터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서 공표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 ○년 3년 평균).

※ 기능노무직 직종과 민간 직종을 비교할 때 연령, 업무내용, 고용형태 면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연수입베이스의 「공무원(C)」 및 「민간(D)」의 데이터는, 각각 평균급여월액을 12배로 한 것에, 공무원은 전년도에 지급된 기말·근무수당, 민간에서는 전년 지급된 연간상여액을 더한 시산치(試算値)다.

3) 교육직

구분	평균연령	평균급료월액	평균급여월액
○○시	세	엔	엔
○○현	세	엔	엔
유사단체	세	엔	엔

4) ○○직

구분	평균연령	평균급료월액	평균급여월액
○○시	세	엔	엔
○○현	세	엔	엔
국가	세	엔	엔
유사단체	세	엔	엔

- 주 1. '평균급료월액'이란 ○년 4월 1일 현재의 각 직종별 직원의 기본급 평균이다.
 2. '평균급여월액'이란 급료월액과 매월 지급되는 부양수당, 지역수당, 주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모든 제반 수당액을 합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급여실태조사에서 제시된 것이다. 또한, '평균급여월액(국가비교베이스)'는 비교를 위해 국가공무원과 같은 베이스(=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것)로 산출한 것이다.

(2) 직원초임급 (○년 4월 1일 현재)

구분		○○현	국가
일반행정직	대학졸	엔	엔
	고교졸	엔	엔
기능노무직	고교졸	엔	-
	중학졸	엔	-
교육직	대학졸	엔	-
	고교졸	엔	-
○○직	대학졸	엔	-
	고교졸	엔	-

(3) 직원의 직무연수별 · 학력별 평균급료월액 (○년 4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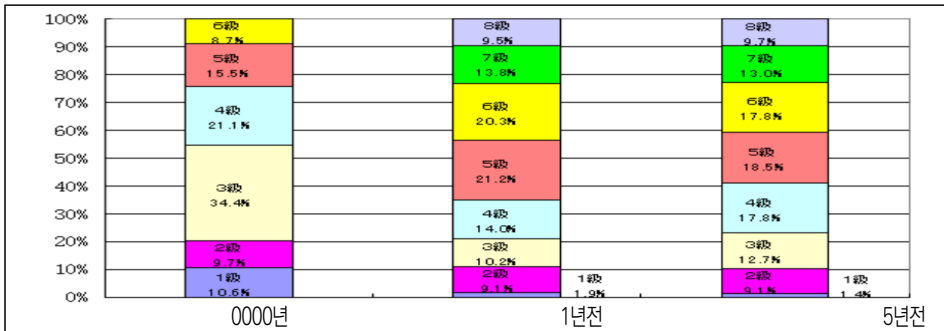
구분		직무연수 10년	직무연수 20년	직무연수 25년	직무연수 30년
일반행정직	대학졸	엔	엔	엔	엔
	고교졸	엔	엔	엔	엔
기능노무직	고교졸	엔	엔	엔	엔
	중학졸	엔	엔	엔	엔
교육직	대학졸	엔	엔	엔	엔
	고교졸	엔	엔	엔	엔
경찰직	대학졸	엔	엔	엔	엔
	고교졸	엔	엔	엔	엔
○○직	대학졸	엔	엔	엔	엔
	고교졸	엔	엔	엔	엔

3. 일반행정직 직급별 직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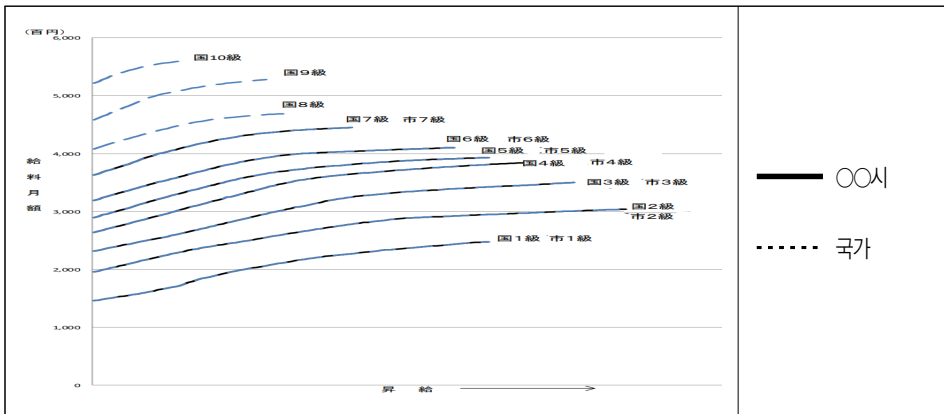
(1) 일반행정직 직급별 직원수 및 급료표 (○년 4월 1일 현재)

구분	표준직무내용	직원수	구성비	1호급의 급료월액	최고호급의 급료월액
○급		인	%	엔	엔
○급		인	%	엔	엔
○급		인	%	엔	엔
○급		인	%	엔	엔
○급		인	%	엔	엔
○급		인	%	엔	엔

- 주 1. ○○시구청촌의 급여조례에 따른 급료표의 직급구분에 의한 직원수이다.
 2. '표준직무내용'이란 각각의 직급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무이다.



(2) 국가와의 급료표카드 비교표 (행정직(-)) (○년 4월 1일 현재)



(3) 승급에 있어 인사평가의 활용상황 (○○시구청촌)

00년 4월2일 ~ 00년 4월 1일		관리직원		일반직원	
인사평가 실시					
	활용하고 있는 승급 구분	승급가능한 구분	승급실적이 있는 구분	승급가능한 구분	승급실적이 있는 구분
	상위, 표준의 구분				
	표준, 하위의 구분				
	표준 구분만(일률)	-		-	
인사평가 미실시					
활용예정시기					

4. 직원수당

(1) 기말수당 · 근면수당

○○시		○○현		국가	
1인당 평균지급액 (○년도) 천엔		1인당 평균지급액 (○년도) 천엔		-	
(○년도 지급비율)		(○년도 지급비율)		(○년도 지급비율)	
기말수당	근면수당	기말수당	근면수당	기말수당	근면수당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가산조치) 직제상 단계, 직급 등에 의한 가산조치		(가산조치) 직제상 단계, 직급 등에 의한 가산조치		(가산조치) 직제상 단계, 직무급 등에 의한 가산조치	

주 : () 안은 재임용직원을 연계한 지급비율이다.

○ 근면수당에 있어 인사평가의 활용상황(일반행정직) (○○시구청촌)

00년		관리직원		일반직원	
인사평가 실시					
	활용하고 있는 성적률	지급가능한 성적률	지급실적이 있는 성적률	지급가능한 성적률	지급실적이 있는 성적률
	상위, 표준, 하위의 성적률				
	상위, 표준의 성적률				
	표준, 하위의 성적률				
	표준 구분만(일률)	-		-	
인사평가 미실시					
활용예정시기					

(2) 퇴직수당 (○년 4월 1일 현재)

○○시				국가			
(지급률)	개인사유	응모인정	정년	(지급률)	개인사유	응모인정	정년
근속20년	월분		월분	근속20년	월분		월분
근속25년	월분		월분	근속25년	월분		월분
근속35년	월분		월분	근속35년	월분		월분
최고한도액	월분		월분	최고한도액	월분		월분
기타 가산조치 (퇴직시특별승급 1인당 평균지급액		천엔	천엔	기타 가산조치			

주 : 퇴직수당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된 평균액이다.

(3) 지역수당 (○년 4월 1일 현재)

지급실적 (○년도 결산)			천엔	
지급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 결산)			엔	
지급대상지역	지급률	지급대상직원수	국가(지급률)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4) 특수근무수당 (○년 4월 1일 현재)

지급실적(○년도결산)		천엔		
지급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년도 결산)		엔		
직원전체대비 수당지급직원비율(○년도)		%		
수당종류(수당액)				
수당명칭	주요 지급대상 직원	주요 지급대상 업무	지급실적 (○년도 결산)	왼쪽 기재 직원에 대한 지급 단가
○○수당			천엔	일액 ○○엔
○○수당			천엔	1건당 ○○엔

(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적(○년도 결산)	천엔
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년도 결산)	천엔
지급실적(○년도 결산)	천엔
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년도 결산)	천엔

주 : 직원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출할 때의 직원수는 '지급실적(○년도 결산)'과 같은 연도의 4월 1일 현재 총직원수(관리직원, 교육직원 등 제도상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다)이며, 단시간근무직원을 포함한다.

(6) 기타 수당 (○년 4월 1일 현재)

수당명칭	내용 및 지급단가	국가제도와와의 차이/동일점	국가제도와 상이한 내용	지급실적 (○년도결산)	지급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결산)
부양수당				천엔	엔
주거수당				천엔	엔
통근수당				천엔	엔
관리직수당				천엔	엔
휴일근무수당				천엔	엔
산업교육수당		-	-	천엔	엔

5. 특별직 보수 (○년 4월 1일 현재)

구분		급료월액 등		
급료	단체장	엔 (엔)		
	부단체장	엔 (엔)		
보수	의장	엔 (엔)		
	부의장	엔 (엔)		
	의원	엔 (엔)		
기말수당	단체장 부단체장	(○년도 지급비율) 월분		
	의장 부의장 의원	(○년도 지급비율) 월분		
퇴직수당	단체장 부단체장	(산정방식)	(1기 수당액)	(지급시기)
	비고			

- 주 1. 급료 및 보수의 ()는 감액조치를 취하기 이전의 금액이다.
 2. 퇴직수당의 '1기 수당액'은 4월 1일 현재의 급료월액 및 지급률에 근거하여 1기(4년=48월) 근무했을 경우의 퇴직수당 예상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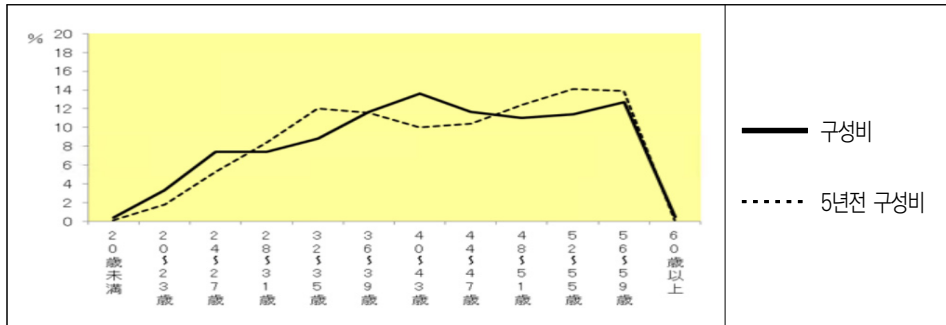
6. 직원수

(1) 부문별 직원수 및 주요 증감이유

부문	구분	직원수		전년도대비 증감수	주요 증감이유
		○년	○년		
보통회계 부문	일반행정 부문				(참고 : 인구10만당 직원수)
	계				
	교육부문				
	경찰부문				
	○○부문				
	소계				(참고 : 인구10만당 직원수)
공영기업 등 회계부문					
	소계				
합계		[]	[]	[]	(참고 : 인구10만당 직원수)

- 주 1. 직원수는 일반직에 속하는 직원수이다.
 2. ()는 조례정수의 합계이다.

(2) 연령별 직원구성 (○년 4월 1일 현재)



구분	20세 미만	20세 ~ 23세	24세 ~ 27세	28세 ~ 31세	32세 ~ 35세	36세 ~ 39세	40세 ~ 43세	44세 ~ 47세	48세 ~ 51세	52세 ~ 55세	56세 ~ 59세	60세 이상	계
직원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3) 직원수 추이

(단위 : 人 · %)

부문별	연도	〇〇년	〇〇년	〇〇년	〇〇년	〇〇년	〇〇년	과거5년간 증감수(율)
일반행정								(%)
교육								(%)
경찰								(%)
소방								(%)
보통회계계								(%)
공영기업등회계계								(%)
총합계								(%)

- 주 1. 각 연도의 정원관리조사에서 보고한 부문별 직원 수.
 2. 합병한 단체의 경우 합병전의 해에 대해서는 합병전 구단체의 합계 직원수.

7. 공영기업직원

(1) 〇〇사업

1) 직원급여비

a. 결산

구분	총비용 A	순손익 또는 실질수지	직원급여비 B	총비용에서 점하는 직원급여비 비율 B/A	(참고) 〇년도 총비용에서 점하는 직원급여비 비율
〇년도	천엔	천엔	천엔	%	%

주 : 자본계정지변(資本勘定支弁) 직원에 관한 직원급여비 〇천엔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직원수(A)	급여비				일인당급여비 B/A	(참고)유사단체 1인당 급여비
		급료	직원수당	기말·근면수 당	계(B)		
〇년도	인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천엔

- 주 1. 직원수당에는 퇴직급여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직원수는 〇년 3월 31일 현재의 인원수이다.

b. 특기사항

2) 직원 평균연령, 기본급 및 평균월수입액 (○년 4월 1일 현재)

구분	평균연령	기본급	평균월수입액
○○현	세	엔	엔
단체평균	세	엔	엔
사업자	세	-	엔

주 : 평균월수입액에는 기말·근면수당이 포함된다.

3) 직원수당

a. 기말수당·근면수당

○○시		○○ (일반행정직·단체평균 등)	
1인당 평균지급액 (○년도)		1인당 평균지급액 (○년도)	
천엔		천엔	
기말수당	근면수당	기말수당	근면수당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월분
(○년도 지급비율)		(○년도 지급비율)	
(가산조치)		(가산조치)	
직제상 단계, 직무직급 등에 의한 가산조치		직제상 단계, 직무직급 등에 의한 가산조치	

주 : ()는 재임용직원을 연계한 지급비율이다.

b. 퇴직수당 (○년 4월 1일 현재)

○○시			○○ (일반행정직·단체평균 등)		
(지급율)	개인사유	응모인정·정년	(지급율)	개인사유	응모인정·정년
근속 20년	월분	월분	근속 20년	월분	월분
근속 25년	월분	월분	근속 25년	월분	월분
근속 35년	월분	월분	근속 35년	월분	월분
최고한도액	월분	월분	최고한도액	월분	월분
기타 가산조치			기타 가산조치		
퇴직시 특별승급	()		퇴직시 특별승급	()	
1인당 평균지급액	천엔	천엔	1인당 평균지급액	천엔	천엔

주 : 퇴직수당의 1인당 평균지급액은 ○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된 평균액이다.

c. 지역수당 (○년 4월 1일 현재)

지급실적 (○년도결산)			千円
지급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결산)			円
지급대상지역	지급율	지급대상직원수	일반행정직제도 (지급율)
	%	인	%
	%	인	%
	%	인	%

d. 특수근무수당 (○년 4월 1일 현재)

지급실적 (○년도결산)		천엔		
지급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 결산)		엔		
직원전체 대비 수당지급직원의 비율 (○년도)		%		
수당 종류 (수당수)				
수당명칭	주요 지급대상직원	주요 지급대상업무	지급실적 (○년도결산)	왼쪽 기입 직원에 대한 지급단가
○○수당			천엔	일액○○엔
○○수당			천엔	1건당 ○○엔

e.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적 (○년도 결산)	천엔
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 결산)	천엔
지급실적 (○년도 결산)	천엔
직원 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 결산)	천엔

- 주 1.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다.
 2. 직원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출할 때의 직원수는 「지급실적(○년도 결산)」과 같은 연도의 4월 1일 현재 총직원수(관리직원, 교육직원 등 제도상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을 제외한다)로 단시간근무직원을 포함한다.

f. 기타수당 (○년 4월 1일 현재)

수당명	내용 및 지급단가	일반행정직의 제도 비교 (동일/차이점)	일반행정직의 제도와 상이한 내용	지급실적 (○년도 결산)	지급직원1인당 평균지급년액 (○년도 결산)
부양수당				천엔	엔
주거수당				천엔	엔
통근수당				천엔	엔
관리직수당				천엔	엔
휴일출근수당				천엔	엔

(2) △△사업

(사업별 동일 양식)

[別添 2] 日本 総務省 : 참고지표에 의한 분석시트 예시(홋카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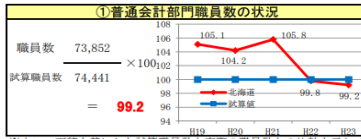
参考指標による職員数等の現状・分析シート

北海道

<基本データ>

団体名	北海道
人口 (H23.3.31)	5,498,916 人
面積 (H23.10.1)	83,457 km ²
全職員数 (H23.4.1)	74,867 人
普通会計部門	73,852 人
一般行政部門	13,879 人
教育部門	48,166 人
警察部門	11,807 人
公営企業等会計部門	1,015 人
財政力指数 (H22)	0.39

※教育・警察の各部門については、国の法令等により配置基準が定めら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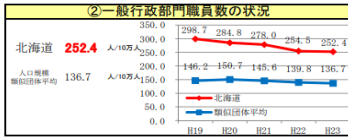


※人口・面積を基にした試算職員数と実際の職員数との比較を示しています。

<三角形の見方>
 ・太線(赤)は 北海道 の状況を表しています。
 ・細線(青)は道府県の平均値等を表し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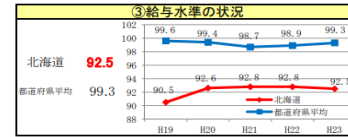
①普通会計部門職員数の状況

99.2



※人口10万人当たりの職員数を示しています。

252.4 人



※職員のうち一般行政職に係る給与水準を示しています。

92.5

②一般行政部門職員数の状況

③給与水準の状況

<分析欄>

【①普通会計職員数の状況】

H22年度に試験研究機関の地方独立行政法人化を実施し、試算職員数を下回る結果になっており、今後とも「連絡職の見直し方針」に基づく出先機関の見直し等を行い、「職員数適正化計画」に掲げる目標値12,600人体制の達成を図る。

【②一般行政部門職員数の状況】

他の都府県と比べ、圧倒的に広大な面積を有している上に、第1次産業の割合が高い産業構造にあることから、業務の性質上、地方自治法に定める「支庁」として14の(総合)振興局を配置するなど、地域にきめ細かく拠点を置く必要があることから、単純に人口当たりで比較すると、類似団体平均を上回る結果となるが、今後も①で示した取組を進め、職員数の適正化を図る。

【③給与水準の状況】

厳しい財政状況等を背景として、平成10年度より給料の独自縮減措置を実施しており、都道府県平均を大きく下回る結果となっている。
 ○平成23年度縮減措置
 ・給料・管理職員 9% その他 7.5%
 ・管理職手当:20%
 ・期末・勤勉手当:役職段階別加算額の1/3相当額を減額

【④その他】

[별첨 3] 영국의 지방정부 정보공개

(※ 한국이나 일본과는 성격상 차이를 가지지만, 참고적 자료로 제시)

(1) 개요

- 영국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2005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시행하고 내각사무국(Cabinet Office)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오고 있음
 - (1) 중앙정부의 경우 2010년 ‘정부 공공정보 공개사용인증제도’(Open Government Licence)를 제정하고, 공공정보 사이트(Data.gov.uk)를 개설하여 모든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본격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 런던시장이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현 영국총리)도 런던정부의 정보공개 사이트(London Data Store)를 개설하였음
 - 미국도 뒤를 이어서 data.gov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후 OECD 국가 중에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로 인정받았음
 -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이 ‘공공정보 공개사용인증제도’의 규정을 준수하면, 정부의 모든 공개자료들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용, 출판, 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8년 다시 정보공개 사이트를 개정하여 ‘Find open data’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음(<https://data.gov.uk/about>)
 - 새로 구축된 정보공개 사이트 ‘Find open data’가 제공하는 정부의 공개자료는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관한 데이터임
 - 이러한 데이터는 모두 파일화되어 다운로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링크 되었음
 -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를 직접 사이트에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인쇄도 가능하도록 하였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공무원과 선출직 정치인 등의 보수체계와 수준, 재정운영 실태, 정부기관들의 수입과 지출, 회계재정 관련 감사결과 등을

모두 수집 가능함

- (2)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data.gov.uk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 채용·인사관리 및 재정 운영 등은 영국 전체의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개별 공공기관의 자율적 영역에 속함
 - 이와 관련하여 인사 관련 정보, 재정 운영 및 수입과 지출, 지방공기업 등 거의 모든 정보들은 각 지방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방정부 정보공개 포털(Socrata Open Data AP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Socrata Open Data API는 전 세계 정부, 비영리기관, 공공기관들의 공공데이터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줌(dev.socrata.com)
- 영국은 이와 같이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의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data.gov.uk로 정보공개 창구를 단일화하였으며 시민이 보건, 교육, 치안, 사법과 교통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공개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정보자유법은 지자체(a local authority), 경찰(police authority), 공중 보건(port health authority)시설 등에 적용되나, 민간기금에 의한 활동들(the City Corporation's privately funded activities)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정보공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2.64백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음

(2) 근거

- (중앙정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근거로 하여 내각사무국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오고 있음
- 영국의 재정정보 공개는 정부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과제 하에서 수행하고 있음
 -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은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재정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투명성 및 책임성 재정정보 공개 규정은 2012년에 발표되었음

- (지방정부) 영국의 지방정부 담당 주무부처인 지역사회·지방정부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장관은 2015년 지방정부 투명성 정부령(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Code 2015)을 제정 발효하였음⁸⁾
 - 지방정부 투명성 정부령은 공개해야 하는 최소 정보, 공개 빈도, 공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 부령은 지방 정부로 하여금 1.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 2. 민주적 책임성 증가, 3. 주민들의 지방의사결정과정에 기여 용이, 4. 공공 서비스 수행을 보조하게 함
 - 이 부령은 1980년 지방정부·계획·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제2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정부들의 기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도록 시행령으로 보다 세부적인 실행원칙들을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한 ‘정보자유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2014년 지방감사·책임성법(Local Audit and Accountability Act)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기록 및 관련자료들에 대한 감사권한 등을 명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UK Data Service) 포털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경제·사회 분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https://ukdataservice.ac.uk/about/>)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cal-government-transparency-code-2015>

(3) 공개 항목

- (중앙정부) 데이터 공개의 범위는 정부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음
 - 공공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개(매월)
 - 담당공무원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보수는 얼마나 받는지 공개(반기)
 -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개(반기)
 - 지방정부 포함 1,880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데이터를 계약 찾기(Contract Finder)에서 공개
 - 건별공개기준: 지방정부 500파운드 이상 건별자료, 중앙정부 1만 파운드 상당의 계약 및 조달자료
 -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 접근가능 포맷을 규정하고 공개 일정을 관리할 규정 제시
 - 공개정보백서(Open Data White Papers) 작성
-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발간하는 투명성 관련 데이터 항목은 다음사항⁹⁾을 포함함
 - 각 부처 장관들의 보수, 이해충돌 신고자료 등
 - 각 부처 정책보조관 이름, 직급, 연간보수 수준 등
 - 국가공무원(Civil service)의 이름, 직급, 직무, 연간보수 및 병가·연가사용 등 관련 자료
 - 국가공무원의 지역별, 직급별 평균보수
 - 각 공공기관들의 기관운영체제(조직도 및 거버넌스 구조 등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적용)
- (지방정부) 지방정부도 투명성과 관련한 데이터 항목들은 동일함¹⁰⁾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ervice-pay-remit-guidance-2021>

10)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 발간 2015년 보고서 자료:

-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는 500파운드 이상 지출내역서
- 정부 공공구매내역 및 공공조달 관리내역
- 정부공공계약 내역
- (매년) 공개 발간해야 하는 정보로 지방정부의 소유 토지, 사회주택 자산
- 자원봉사단체, 지역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배분한 보조금 내역
- 조직운영체계와 조직도
- 지방공무원 노조활동 시간 내역
- 공용주차관리에 따른 재정수입 및 관리
- 고위직 지방공무원 보수, 관련 수당 등

(4) 공개 장소

- (중앙정부) 영국 공공기관의 모든 정부 관련 공개정보들은 'Find open data'(Data.gov.uk)에서 '탐색 및 찾기'를 통해서 개별 공공기관의 데이터에 연결(링크)하면 수집 가능함
-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공개사이트'(Data.gov.uk)에서 찾을 수 있는 등록된 정부기관들은 수상 내각사무국과 디지털정부실(Government Digital Service)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면서 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음¹¹⁾
 - 2017년 기준 정보공개 자료가 등록된 정부기관 목록(list of potential data registers)등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자선기관(Charities), 국립보건서비스(NHS Business Services Authority)와 공공병의원(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등까지 포괄하고 있음
- (지방정부) 각 지방정부마다 홈페이지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개 운영하고 있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cal-government-transparency-code-2015>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transformation-strategy-2017-to-2020/government-transformation-strategy-appendix-list-of-potential-data-registers>

으므로 개별 지방정부의 정보를 탐색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지방정부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중앙정부 정보공개 포털 Data.gov.uk에도 동일한 정보공개 자료들이 있음
- (지방정부 각 정보공개 홈페이지 및 포털 사례) 캄덴 런던자치구: <https://opendata.camden.gov.uk/> , 잉글랜드 햄프셔 카운티 (Hampshire county council) 지방정부 Open data: <https://www.hants.gov.uk/aboutthecouncil/informationandstats/opendata>, 케임브리지(Cambridge city council) 시정부: <https://www.cambridge.gov.uk/open-data-transparency-in-local-government>

(5) 공개 양식

- (중앙정부) 중앙부처마다 발간 공개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포맷(Excel files)¹²⁾
 - 23개 중앙부처 및 부처 소속기관 등을 포함한 581개 기관에 대한 행·재정 및 활동보고서 공개
 - 본 공개 데이터를 열람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마다 ‘사이트 링크’로 연계되어 있어서 개별기관마다 링크를 열고 열람, 자료수집(다운로드), 인쇄 등을 할 수 있음
- (중앙부처 사례): 법제부처(Government Legal Department)
 - ‘data.gov.uk/Find open data’ 사이트에서 탐색기를 활용하여 ‘법제부처’를 보기로 탐색¹³⁾
 - 결과를 보면 관련부처의 공무원 조직, 직무, 보수는 물론 중앙부처로서 500파운드 이상 공공구매 사용내역, 지출결과, 성과보너스, 인사관리운영 정보는 물론 2만5천 파운드 이상 중앙부처로서 거래지출내역 등도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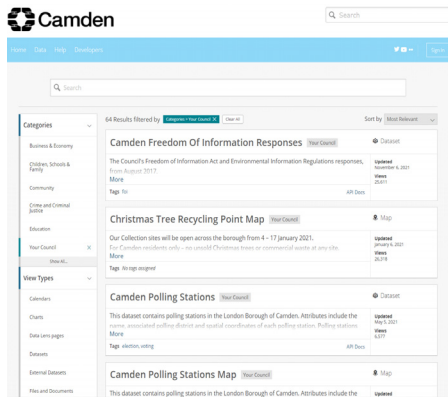
12)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inisterial-departments>

13) <https://data.gov.uk/search?filters%5Bpublisher%5D=Government+Legal+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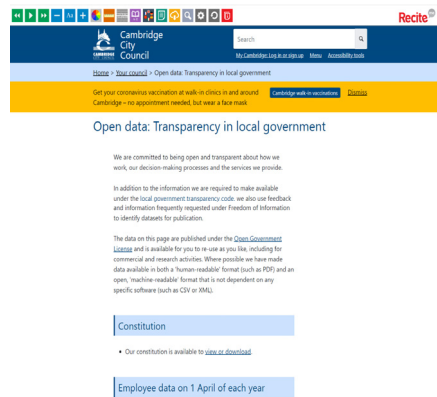
람, 수집 가능함

- (지방정부) 지방정부마다 발간 공개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포맷(Excel files) 등도 동일함
 - 즉, 모든 정보공개 양식은 Excel 파일, CSV 통계관리 파일, Pdf 파일, HTML 인터넷 문서 파일 등 ‘dataset’으로 다운로드 가능
-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시스템도 그림과 같이 개별적이지만 중앙 포털과 연계됨

(캠덴 런던자치구)



(햄프셔 카운티 지방정부)



- <https://opendata.camden.gov.uk/browse#>
- <https://www.cambridge.gov.uk/open-data-transparency-in-local-government>

(6) 공개 시스템 구성

- (중앙정부) 영국 공공정보 공개는 ‘data.go.uk’로 일원화되어 있음
 - 현재 새로운 베타 서비스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음 (data.gov.uk)
- (지방정부) 영국 지방정부들의 공개 시스템 운영은 연계되기도 하고 개별 운영도 유지함
 - 맨체스터시 지방정부(Manchester)와 런던시의 캠덴자치구(London

Borough of Camden) 개별 지방정부와 관련한 공개정보 탐색을 위한 시스템, 방법과 절차는

- 1) 정부 공개정보 열람 사이트에 접속하고,
- 2) ‘찾기’ 항목에서 ‘Manchester’ ‘London’ 또는 ‘Camden’ 키워드 검색을 통해, <https://data.gov.uk/search?q=manchester&filters%5Bpublisher%5D=&filters%5Btopic%5D=Towns+and+cities&filters%5Bformat%5D=&sort=best>
<https://data.gov.uk/search?filters%5Btopic%5D=Towns+and+cities>
- 3) 아래 그림과 같이 ‘찾기 결과’에서 ‘Manchester city council’과 ‘London Borough of Camden’을 다시 찾으면 다음의 결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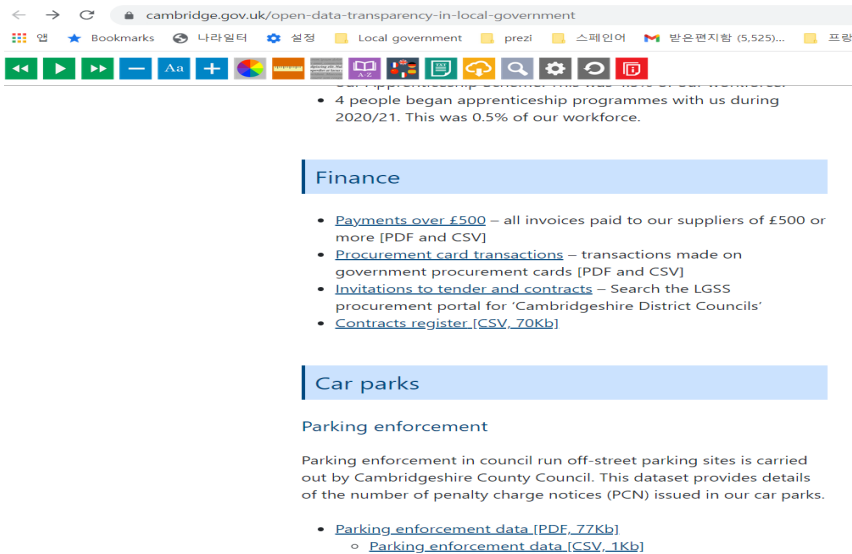
The screenshot displays the data.gov.uk search interface. On the left, the search results are filtered by 'Manchester City Council' and 'Towns and cities'. The results list includes 'Public Toilets in Manchester' and 'Licensed Premises in Manchester'. On the right, the search results for 'London Borough of Camden' are shown, including 'HM Revenue and Customs real time data page for energy consumption' and 'Section 17 Third Party Information (TPI) Mart'. The page also shows the 'Filter by' section with options for 'Publisher', 'Topic', and 'Format', and the 'Sort by' section with 'Best match' selected.

- 4) 탐색조건으로 우측 상단에서 최적항목('Best match'), 최근항목('Most recent')으로 다시 관련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된 주요 시스템은 중앙계약보고 온라인시스템(Online System for Central Accounting and Reporting)과 국가보조금정보시스템(Government Grant Information System)임

○ (지방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들의 재정정보 공개는 위 공개 시스템
 에서와 같이 개별 지방정부마다 재정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사무관리, 인사
 운영 등 모든 개별정보들이 공개원칙으로 규정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 개
 별 지방정부 데이터 포털로 탑재되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도록 공
 개하고 있음

- 케임브리지 카운티 지방정부의 재정정보 공개 사이트:¹⁴⁾



(7) 공개 시스템 운영

○ (중앙정부)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명성위원회(Public Sector Transparency Board)를 설립하였음

- 이 위원회는 데이터 표준 설정, 정부 데이터 공개 장려, 공공데이터 원칙 지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14) <https://www.cambridge.gov.uk/open-data-transparency-in-local-government>

- 정보공개기구(Open Data Institute)를 설립하여 공공정보 맞춤형 공개,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기업 등에게 펀딩 지원 역할을 수행함
- 투명성 및 책임성 정책의 정보공개 상세 계획은 영국 열린정부 실행계획(UK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2013년 Deloitte가 분석한 보고서에 공공부문의 경제적 정보 가치는 18억 파운드로 추정하였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이익도 약 50억 파운드로 추정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를 통한 활용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강구하게 되었음¹⁵⁾
 - 이에 2015년 영국 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부처령(Local Government Transparency Code 2015)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방정부 정보공개 항목, 운영 시스템, 공개제도의 체계화 등을 구축·관리하게 되었음
 - 중앙부처의 2015년 보고서에서 제시한 3가지 원칙은 수요가 주도하고(demand led), 공개원칙(open)과 공개시기의 적절성(timely) 등으로 유도하였음
 - 중앙부처는 분기별로, 연간별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데이터 항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각 지방정부가 준수하도록 하였음
 - 또한 공개된 정보의 인쇄, 발간방법 등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인쇄물로 배포해야 하는 자료들은, 수입과 지출 데이터, 공공구매 및 조달행위에 관한 정보와 자료, 지방정부 토지관리 현황, 주차공간 관리현황, 조직도, 보조금 배분내역 등임

15) Deloitte for the Shakespeare Review of Public Sector Information(2013), "Market Assessment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Deloitte, May 2013.

- expenditure data (see paragraph 58)
- procurement information (see paragraphs 59 and 60)
- local authority land (see paragraph 61 and 62)
- parking spaces (see paragraphs 63 and 64)
- organisation chart (see paragraph 65)
- grants to voluntary, community and social enterprise organisations (see paragraphs 66 and 67),

- 영국 정부가 추천한 발간방법은 Web이 우선이고,
- 다음으로 그림, 표 테이블과 함께 반드시 Excel 파일로 공개하기,
- 세 번째는 CSV, XML 파일
- 네 번째는 RDF, SPARQL21 등 www 상의 공개표준 포맷
- 다섯 번째는 공개된 자료와 함께 관련이 있는 자료들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함께 관련 맥락도 같이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엑셀파일 사례)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중간 및 고위공무원들의 2021년 기준 보수체계, 직급구조, 직 무명칭 등

Post Unique Reference	Name	Grade (or equivalent)	Job Title	Job/Team Function	Parent Department	Organisation	Unit	Contact Phone	Contact E-mail	Reports to Senior Post	Salary Costn of Reports (£)	FTE	Actual Pay Floor (£)	Actual Pay Ceiling (£)	Total Pay (£)	Professional/ Occupational Group	Notes
고유 번호	이름	직급 (계급)	직무 명	직무/ 팀 기능	본 소속	근무 기관	소속 부서	전화 번호	메일 주소	상급 보고자	봉급 보고 비용	전일제	최저 보수	최고 보수	총 급여 수준	직무 성격	기타
HO429	Matthew Rycroft	SCS4	Permanent Secretary	Permanent Secretary	Home Office	Home Office	PO Permanent Secretary (A)	0207 035 4848 or Minicom 0207 035 4742	public.enquiries@homeoffice.gsi.gov.uk	XX	2595659	1	180000	184999	N/A	Policy	
HO467	Patricia Hayes	SCS4	Second Permanent Secretary	Second Permanent Secretary	Home Office	Home Office	2PUS (A)	0207 035 4848 or Minicom 0207 035 4742	public.enquiries@homeoffice.gsi.gov.uk	HO429	612514	1	150000	154999	N/A	Policy	
HO424	Rachel Watson	SCS3	Director General	DG Public Safety	Home Office	Home Office	CPFG Director General (A)	0207 035 4848 or Minicom 0207 035 4742	public.enquiries@homeoffice.gsi.gov.uk	HO429	0	1	90000	94999	N/A	Policy	On TCA to SCS3. Salary Cost and FTE of Reports Rolled up into HO429.

[별첨 4] 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전부개정, '22.1.13 시행)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정보공개법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 ④ 삭제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기구정원규정

제40조(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8조(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